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 및 법률과 조례 등 자치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방세담당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해야 하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각종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 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 및 자치법규가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귀하는 지방세담당공무원으로 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9년도 재정운영 규모

○ 예산규모

총예산액 : 10조 1,104억원

일반회계 : 7조 1,774억원　　특별회계 : 2조 9,330억원

○ 일반회계 : 7조 1,774억원

세 입 (71,774억원)		(전년대비)
■ 지 방 세	37,774(52.63%)	-1.43%
■ 세외수입	4,999(6.96%)	118.87%
■ 지방교부세	5,900(8.22%)	18.00%
■ 보 조 금	21,072(29.36%)	18.79%
■ 보전수입 등	2,029(2.83%)	15.97%

세 출 (71,774억원)		(전년대비)
■ 일반공공행정	10,607(14.78%)	-6.82%
■ 공공질서안전	3,018(4.21%)	130.68%
■ 교육	7,584(10.57%)	2.43%
■ 문화 및 관광	3,486(4.86%)	28.24%
■ 환경보호	1,941(2.70%)	-9.89%
■ 사회복지	27,736(38.64%)	17.06%
■ 보건	487(0.68%)	41.85%
■ 농림해양수산	2,203(3.07%)	56.71%
■ 산업중소기업	675(0.94%)	19.38%
■ 수송 및 교통	7,313(10.19%)	21.57%
■ 국토지역개발	2,656(3.70%)	19.13%
■ 과학기술	279(0.39%)	-27.35%
■ 예비비·기타	3,789(5.27%)	-30.94%

○ 특별회계 : 2조 9,330억원

(단위:억원)

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소 계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소 계	소 방	의료급여기금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기 타
29,330	12,018	4,351	2,122	5,545	17,312	2,649	5,249	2,933	6,481

CONTENTS

지방세 개요

○ 지방세 의의 5
○ 지방세 월별일람표 9
○ 지방세 용어 12

2019년 달라진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19
○ 지방세징수법 21
○ 지방세법 22
○ 지방세특례제한법 26

지방세 세목별 개요

○ 각 세목별 개요 53

지방세 비과세 · 감면 및 중과세 제도

○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75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77
○ 지방소득세 특례 100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107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110
○ 지방세 중과세 제도 112

지방세 구제제도 및 마을세무사 제도

○ 지방세 구제제도 125
○ 마을세무사 제도 128

납세자보호관 제도

○ 납세자보호관 제도 133
○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134
○ 납세자보호관 업무 및 처리절차 135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 지방세 납부방법 145
○ 지방세 납부매체 149
○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방법 151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여야하는 세금 155
○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160
○ 차량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여야하는 세금 162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166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168
○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169
○ 생활과 밀접한 국세 171

지방세 개요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Ⅰ 지방세 의의

1 지방세 의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그 살림살이를 합니다.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방공공재와 행정서비스, 즉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실정법상에서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구세(지방자치단체의 구의 구세)를 말합니다.

2 법적 근거

- 헌법(제59조)에 의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조세법률주의)
-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세목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 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각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규정
	지방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의 세목, 세율 등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 관계법임

3 ▸▸ 국세 및 지방세의 분류


조세(25)
국세(14)
내국세(13)
보통세(10)
소 득 세
법 인 세
상 속 세
증 여 세
부 가 가 치 세
개 별 소 비 세
주 세
인 지 세
증 권 거 래 세
종합부동산세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 육 세
농어촌특별세
관세(1)
지방세(11)
보통세(9)
취 득 세
등 록 면 허 세
레 저 세
담 배 소 비 세
지 방 소 비 세
주 민 세
지 방 소 득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4 ▸▸ 지방세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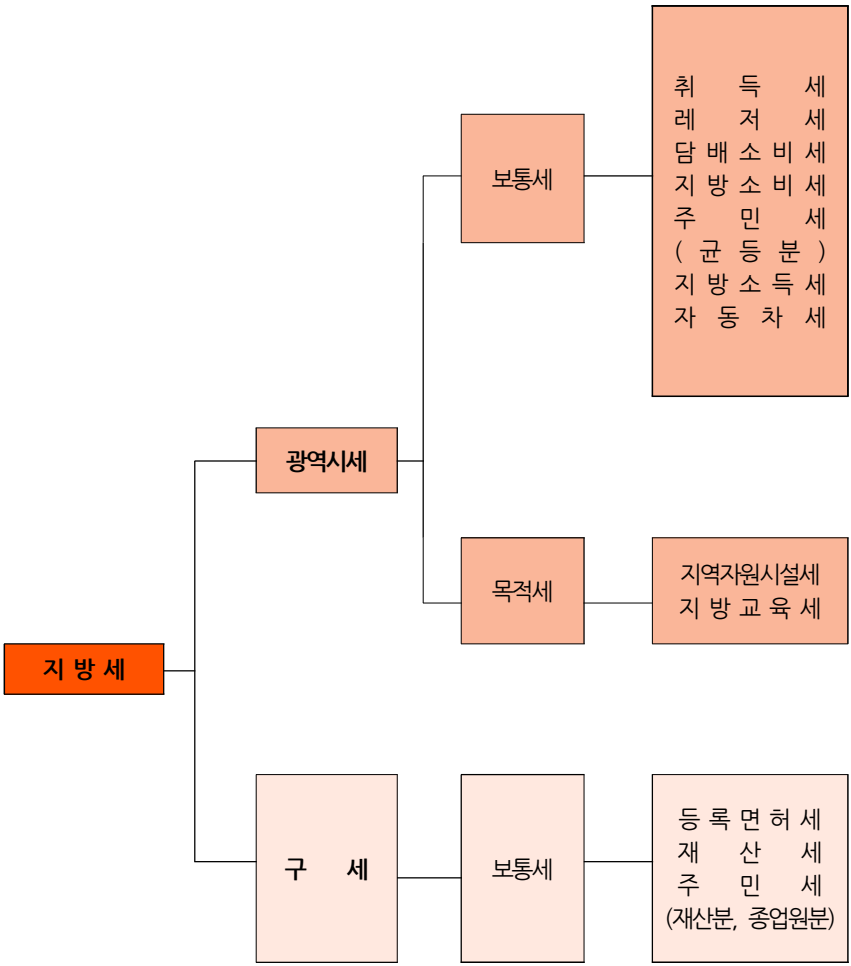

※ 군세(강화군, 옹진군)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 ▸▸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일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록분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면허분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로 반입(搬入)하는 때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주민세		과세기준일(균등분 7월 1일, 재산분 7월 1일,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자동차세	소유분	납기가 있는 달(6월·12월)의 1일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때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때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하는 때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6월1일)
지방교육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징수지방소득세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수시분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Ⅱ 지방세 월별 일람표

1 지방세 납부일정

월별	지방세		국세
	광역시세	군구 세	
1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1.31일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1.31일한)	• 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 (1.16~1.31일) - 군의 경우 시세	•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25.한)
3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자동차세 분할납부(3.31일한)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3.31.한)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30일한)		•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4.25.한)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신고 납부 ⇒ 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5.31일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31.한)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기(6.16~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자동차세 분할 납부(6.30일한)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30.한)
7월	• 지역자원시설세[주택(1/2), 선박, 건축물], 지방교육세 납부(7.16~31일)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31일한)	•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7.31일한) • 재산세[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납부(7.16~30일)	•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7.25.한)
8월	• 주민세(균등분) 납부(8.16~31일)		
9월	• 지역자원시설세 [주택(1/2)] 지방교육세 납부(9.16~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 자동차세 분할 납부(9.30일한)	• 재산세[주택분(1/2),토지]납부 (9.16~31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9.30.한)
10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10.31일한)		•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한)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30.한)
12월	• 자동차세(2기분) 납부 (12.16~31일) • 자동차세 분할 납부 (12.31일한)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12.31.한) • 종합부동산세 납기(12.1~12.15)
연중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매월 10일한 • 레저세 : 매월 10일한 • 지역자원시설세 : 매월 10일한 • 담배소비세 : 매월 말일한 • 지방소비세 : 매월 25일한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 환경세 납부 기한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한	• 교통·에너지·환경세 (다음 달 말일 한) • 원천징수 소득세 등 (다음 달 10일한)
수시	• 신고납부세목 수시 납부·미납부 수시 부과 •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 부과	• 등록면허세 수시분 신고 납부 - 군의 경우 시세	

2 ▸▸ 지방세의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 납부기한
취 득 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 민 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균등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 재산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 동 차 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12.16~12.31) •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신고납부 • 양도 · 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수시부과, 무신고 및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결정·경정 고지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매년 7월(16~31), 9월(1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매년 1.16~1.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 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 등록면허세 납부
재 산 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남동구,서구,강화군)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옹진군)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과 같음(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 1기:4.1~25(예정),7.1~25(확정)/2기:10.1~25(예정), 다음연도1.1~25(확정) ※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 •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가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 ·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 ·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납부기한까지

3 ▸▸ 지방세 세율

세 목	과 세 대 상		세 율
취 득 세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일반세율 : 2.8%, 3.5%, 4.0% 등 유상취득(주택) : 1.0% ~ 3.0% 중과세율 : 2.8%, 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세)		부가가치세액의 15%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6 ~ 1천분의42
	양도소득		1천분의6(16) ~ 1천분의42(52), 1천분의10~1천분의70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5
	특별징수		원천징수액의 100분의 10
주 민 세	균 등 분	개인 · 법인 · 개인사업자	개인(10,000원), 법인(75,000~750,000원), 개인사업자(75,000원)
	재 산 분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1㎡당 250원
	종 업 원 분	급여액	급여총액의 0.5%
자 동 차 세	소 유 분	승용 자동차(비영업용)	년 1cc당 80~200원
		승합 자동차 / 화물자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 행 분	교통 · 에너지 · 환경세(국세)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담배소비세	담배 제조 및 수입업자		20개비(1갑)당 1,007원
레 저 세	승마(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0.04~0.12%
	특정자원분	발전소	kwh당 원자력(1원), 화력발전(0.3원)
		지하수	1㎥당 음용수(200원), 온천수(100원), 기타(2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20%(취득분 20%제외), 20%, 40%, 25%(군지역은 10%), 20%, 30%, 43.99%
재 산 세	재 산 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토지 (종합) 0.2~0.5%, (별도) 0.2~0.4%, (분리)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그 밖의 토지 : 0.2% 건축물 0.25%, 주택 0.1~0.4%, 별장 4%, 선박 0.3%, 고급선박 5%, 항공기 : 0.3%
	재산세도시지역분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등록면허세	등 록	부동산 등기	보존(0.8), 이전(1.5, 2.0), 설정(0.2)
		선박 등기	보존(0.02), 기타(건당 1만5천원)
		차량의 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설정(0.2), 기타(1만원)
		법인등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증가(0.4) 비영리법인 : 설립(0.2), 출자증가(0.2)
	면 허	각종 인허가 등 면허	18,000원~67,500원(군지역 4,500원~27,000원)

Ⅲ 지방세 용어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합니다.

지방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함)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자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합니다.

과세물건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세 율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할 세액(세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 납부세액의 산출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납세의무는 성립 → 확정 → 소멸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째, 납세의무의 성립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이 때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때는 세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신고납부(국세 : 신고납세), 보통징수(국세 : 부과과세), 특별징수(국세 : 원천징수)라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납세의무의 소멸은 조세채무의 소멸을 뜻하는데,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사유로는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서

지방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합니다.

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미납부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위법 또는 착오 부과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입니다.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거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하며,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징수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재산세, 자동차세 등

특별징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지방세법상 지방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에게 지방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지방세를 일정한 기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징수방법을 말합니다. 이때의 징수의무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합니다.

전자신고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세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입니다.

☞ 납기경과후 1월까지는 본세의 3% 가산

☞ 납기경과후 2월부터는 본세의 0.75% 가산(단, 60개월을 초과 못함)

수정신고 제도

사유제한 없이 과세권자의 부과고지 전까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 제도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부과고지전 이라면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납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천재·지변·재해·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납세자가 정당세액보다 초과 납부하였거나, 착오·이중납부 또는 과세기관의 부과착오로 잘못 낸 세금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과세권자가 알 수 있는 경우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합니다.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를 기한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가산세 적용

- 신고·납부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 : 10 ~ 40% 가산세 부과
- 기간내 미납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5

2019년
달라진 지방세

2019 달라진 지방세 주요내용

Ⅰ 지방세 기본법

1 전자송달 및 위택스 본인 인증수단 확대(§2, §28, §30 등)

- 기존의 지방세정보통신망 및 전자송달 방법 외에 대다수 납세자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송달 방법 추가

(현 행)		(개정)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	전자우편주소, 전자사서함,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은 '연계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는 곳'으로 구체화(제28조 제1항 단서 후단 괄호)

- 지방세정보통신망* 회원가입 및 이용시 인증서 외에 본인 확인을 거친 인증수단으로 가능하도록 확대(제28조 제1항)

※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행안부 고시)」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WeTAX)

2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개선(§38②)

- 후발적 경정청구와 같이 일반적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2개월)를 적용하여 납세자 권익 제고(법 제80조제3항)

※ (국세)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항제3호 개정하여 '17.1.1.부터 일반적 경정청구자에 대한 2개월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 「지방세법」제103조의5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환급) 가능하도록 개선

※ 소득세(제1항) 및 법인세(제2항)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 통보 기한

3 ▸▸ 특별징수대상자 경정청구 절차 신설(§50④)

◆▸▸ 국세와 동일하게 특별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납세자 권익 강화 및 불필요한 소송 방지

〈 명의자와 실질소득자가 상이한 경우 현행 업무처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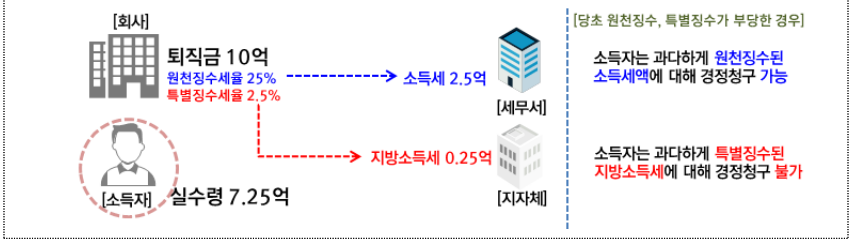

※ 국세의 경우 ~ '03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절차만 규정했으나, '03.12.30.「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절차를 규정

4 ▸▸ 가산세 기준 금액 명확화 등(§53, §54, §55, §60⑩)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상 가산세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은 제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이자 상당 가산액은 포함(조문 보완)

가산세 구분	국세		지방세			
			현행		개정	
	가산세	이자 상당 가산액	가산세*	이자 상당 가산액	가산세	이자 상당 가산액
무신고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제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제외**	**제외**	**규정없음**	**규정없음**	**제외**	**제외**
납부·환급불성실	-	**포함**	-	**규정없음**	-	**포함**

* 소득과 무관한 가산세(예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 지급금액×1%)

◆▸▸ 과세기간을 단순 착오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정당한 과세기간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5 ▸▸ 납부·환급불성실 등 가산세율 인하 [령 §34]

◈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연 6%~8%) 등을 감안하여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25%)로 인하

* '18.4월부터 시중 은행 연체이자율 인하(연 8%~13% → 연 6%~8%)

※ 〔연체이자율 계산〕대출금리(연 3~5%) + 가산이자율(연 5%~8% → 연 3%)

※ '18년 국세 세제개편(안)을 동일하게 반영

Ⅱ ▸▸ 지방세 징수법

1 ▸▸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납부제한 폐지 [§23④]

현 행	개 정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 납부제한 사유 - 지방세 체납자 중 3건 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인 경우	□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 납부제한 규정 - 〈삭제〉

◈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납세자 간 형평성 도모

2 ▸▸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율 인하 [§31①]

현 행	개 정
□ 중가산금의 가산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	□ 중가산금율 인하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로 개정

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인하(연 6%~8%), 국세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추진 중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등과 연계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발생하는 중가산금을 종전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하여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납된 지방세의 조속한 납부를 촉구함

* 기획재정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의4(납부 · 환급불성실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의 개정을 통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일 0.03%(연10.95%)에서 1일 0.025%(연 9.13%)로 인하

3 ▸▸ 독촉장 ·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 연장 [§32③]

현 행	개 정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납부기한
-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개정

독촉장·납부최고서 발급 후 도달하기 까지 통상적인 우편송달 기일 등을 감안하여 실제 납부 가능 기간을 보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강화

Ⅲ ▸▸ 지방세법

1 ▸▸ 상속재산 상속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 명확화 [§7⑬]

(종전)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 시기가 공동상속인 간의 재분할 약정일인지 재분할 등기일인지가 불분명

(개정)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를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로 명확히 함

※ 아울러 신고납부기한을 제20조제4항의 "등기·등록 전까지"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제1항의 "상속일로부터 6개월"임을 명확히 함(§20 →§20①)

2 ▸▸ 가정어린이집 등에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11①8]

-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 정부의 저출산 대책 지원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취득세 인하
  -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
  - ❖ (현행) 일반 세율 4% → (개선) 주택 유상거래특례세율(1~3%)* 적용
    * 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
    ※ 노인복지주택(분양형)의 경우 「노인복지법」 개정('15.7.29.)으로 현행 규정의 존치 실익이 없어 함께 정비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사업자의 임대형 노인복지시설은 준주택에 해당)

3 ▸▸ 중과세 및 감면의 과세 전환시 취득세 신고기간 연장 [§13⑤3·4, §20②·③, §30②·③]

〈 일반과세→중과세, 감면→과세전환 〉

- **(종전)** 취득세·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경우
  - ❖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개정)**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함

〈 고급주택 등의 용도전환 〉

- **(종전)**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3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적용 제외
- **(개정)** 60일 이내에 중과대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중과적용 제외

4 ▸▸ 사업소 정의 규정 보완 [§74]

- 주민세 균등분 · 재산분 · 종업원분에 적용되는 사업주 정의 규정에서 과세 실무상 재산분에만 적용가능한 사업소* 기간요건**을 삭제
  *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
  ** 7월 1일(재산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 제외

❖ 해당 내용은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 판단시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75조 제2항으로 이관

5 ▸▸ 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 변경 [§79②]

- 주민세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8월1일에서 7월1일로 변경하여 과세의 정확성 · 신뢰성을 제고하고, 세목간 과세기준일을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
  ※ 균등분 부과의 기준일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부과기간·세부담 등 납세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6 ▸▸ 지방소비세 확대 [§69 ②]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규모를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11%에서 15%로 확대
- 지방소비세 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7 ▸▸ 특별징수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징수 강화 [§103의14, §103의29④]

- 특별징수 미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그 세액을 **납부했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여 제도이행 강화

〈 특별징수 업무처리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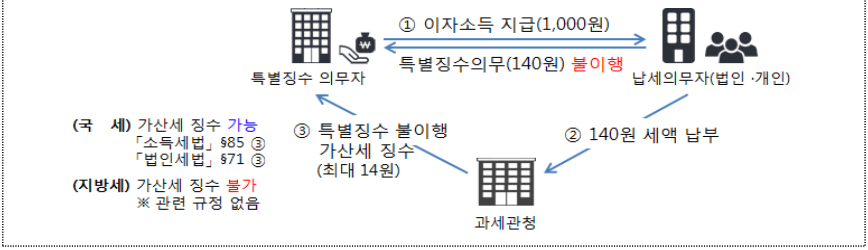

8 ▸▸ 개인간 거래시 취득가격 범위(직·간접 비용) 명확화 〔영 § 18①〕

- **(종전)** 개인간 거래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가 과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함
- **(개정)**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중개보수를 취득가액(직·간접 비용)에서 제외토록 명확화

9 ▸▸ 금융지주회사 대도시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제외 〔영 § 45②〕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 대도시 중과제도 및 금융지주회사의 성격, 그동안 면제 경위 등 고려하여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금융지주회사는 기존 은행의 소규모의 시설 및 직원을 지원받는 형태로써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및 과밀화와 관련성이 낮고, 「조특법」상 면제 대상이었으나 '14년 「지특법」 이관 과정에서 일몰종료

10 ▸▸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 합리화 〔영 § 138①②〕

- 소방재원의 원인자 부담원칙 제고를 위해 화재위험 건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를 규정

❖ 바닥면적 500㎡이상 학원(교육연구시설)도 자원시설세 중과세(2배) 대상임을 명확화

❖ 창고시설 중 하역장·집배송시설을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2배)에 추가

❖ 의료시설을 중과세 대상에 추가하되, 화재위험도에 따라 2배·3배로 구분

- (2배) 의료시설 중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 (3배) 정신보건시설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 이상(소방시설법상 중점관리대상)

Ⅳ 지방세특례제한법

1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취득기준 명확화 [제6조]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시설에 대한 감면기준 통일

❖ 현행 감면기준* 적용이 농지 취득에만 국한되어 운영혼란 야기

* 자경농민 농지취득 감면기준(시행령 제3조제2항)
ⅰ) 도시지역외의 농지 ⅱ) 신규취득 농지 소재지 또는 20km 이내 거주
ⅲ) 감면한도(본인 및 배우자 소유를 합하여 30,000㎡ 이내 등)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감면기준 신설

* 자경농민 농업용시설 감면기준(시행령 제3조제3항)
ⅰ) 도시지역외의 농업용시설일 것
ⅱ) 신규취득 농업용시설 소재지 또는 20km 이내 거주

2 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 [제31조, 제31조의3]

현행 추징사유*에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추징범위는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에서 감면대상 전체로 확대

3 서민주택 감면범위 조정 및 추징요건 신설 [제33조]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감면으로 공급(매매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속, 원시취득은 감면 배제
  - ❖ 증여는 재산 이전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상속과 실질이 유사하므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대상 제외
    * 취득가액 1억원 미만의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거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채 임대로 거주하면서 단기적 시세차익을 노리고 서민주택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사례 다수 발생
  - ❖ '부동산 투기' 등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해당 조문에 취득 목적*을 명시하고 취득 이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
    * 취득 목적 : (현행) 규정없음 → (개정) '상시 거주할 목적' 신설

4 개인기업 법인전환 감면 추징규정 강화 [제57조의2]

- 조특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 추징규정 보완
  - ❖ 해당사업 폐업 및 자산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국세 수준으로 확대(2년→5년)
  - ❖ 거주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등 실질적 법인전환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추징근거 마련(다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추징의 예외적 사유를 시행령으로 열거)

5 ▸▸ 창업·벤처 중소기업 감면 요건 및 대상 명확화 [제58조의3]

(벤처기업확인서 기준 명확화)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견(異見)* 발생

* 과세관청은 벤처기업확인서를 최초로 받은 날로 해석하는 반면, 납세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매 2년마다 발급받은 날로 해석

❖ 벤처기업확인서를 최초로 받은 날로 개정하여 감면기준 명확히 규정

(세정 신뢰성 제고)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의 심판 결정 내용이 상반되어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조세민원 발생

❖ 창업 당시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규정하여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추가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감면대상임(조심2016지536, '17.3.15)

(중복 내용 삭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에서 '재산세'를'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라는 문구에서 중복적인 내용 삭제

(암호화 화폐 거래소 감면 제외) 암호화 화폐 거래소는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18.10.2.)

6 ▸▸ 매매·수출용 중고자동차 감면 개선 [제68조]

감면 목적·대상 및 지원세목 등이 다름에도 추징규정을 같은 항에서 규정, 그 적용에 관한 해석여지 발생

❖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매각하거나 수출하는 경우를 모두 목적 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

❖ 또한,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추징 배제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용으로 감면받고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수출하는 경우에 限하여 목적 내 사용으로 보아 추징 배제

7 서민주택 감면 관련 1가구 범위 개정 [령 제15조]

법 제15조제3항에서 서민주택의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1가구로 간주

❖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세율 특례의 1가구 판단 시, 30세 미만 미혼의 세대분리된 부모에 한해 1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17년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0세 미만 미혼에 대한 1가구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납세자 혼란 초래

❖ 지방세법상 상속세율 특례의 1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개정

8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관련 주택 범위 신설 [령 제17조의2]

법에서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이하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혼인 예정자 등 고려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9 ▸▸ 개인기업 법인전환 추징 예외사유 신설 [령 제28조의2]

◆▸▸ 법 개정에 따라 주식 처분이 추징 사유로 확대됨에 따라 감면 후 주식처분 중 추징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 보완

- 사망하거나 파산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나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법인세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 가업의 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취득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10 ▸▸ 대체취득 부동산 초과액 산정방법 개선 [령 제34]

◆▸▸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취득세 과세

❖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호에 따른 취득*) 초과액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에서 수용 등에 따른 보상금액을 뺀 금액

* (대상) ① 국가, 지자체 등 ② 수입 ③ 법인장부 ④ 공매 ⑤ 검증된 취득

❖ (그 외의 경우)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

◆▸▸ 상가 건물은 실거래신고 검증대상 등 사실 상의 취득금액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상가 건물을 수용 등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 초과액은 대체취득한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서 매수·수용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

❖ 상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원가방식*에 따라 산정되므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어 초과액이 상대적으로 과소

* (건물 시가표준액) 신축건물기준가액(69만원)×각종지수×경과년수×면적×가감산특례

〈 개정 전·후 초과액 비교〉

구분	매수·수용된 부동산(주택)	대체취득 부동산(상가)	초과액	
			현행	개정
보상금/취득가액	10억	15억	5억	5억
시가표준액	8억	9억	1억*	5억**

* (현행) 초과액 = 대체취득 부동산 시가표준액 – 수용 등 당시 시가표준액
= 9억 - 8억 = 1억

** (개정) 초과액 = 취득세 과세표준 – 보상금액 = Max(15억, 9억) - 10억
= 15억 - 10억 = 5억

상가 건물을 수용 등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금액 적용방식 개선

※ (현행) 초과액 = 대체취득 부동산 시가표준액 – 수용 등 당시 시가표준액
(개정) 초과액 =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보상금액

11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감면 범위 명확화 [규칙 제8조]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한 감면 적용시, 신규 취득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로 '공장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을 규정

❖ 산업단지 감면의 경우 '공장'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공장용 부동산 및 부대시설(수익사업은 제외)'로 규정하여 서로 그 범위가 상이

대도시 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대상 입주지역에 관계없이 감면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여 조세형평성 제고 필요

* 공장의 범위 비교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 (법§78, 규칙§6, 별표2)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공장 (법 §80, 규칙 §8①)
◆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 200㎡이상 ◆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포함 (수익사업용 제외)	◆ (좌동) ◆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 포함

현재도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부대시설(식당, 헬스장 등)은 감면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 합리적 감면운영을 위해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

참고1 2018 일몰도래 감면 개정 현황

1 ▸▸ 농·어업 분야

현 행	개 정
<①농업·임업·어업·연안여객용 면세유, 조세특례제한법 §106-2①②> ○ (감 면 율)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②농어촌공사의 국가 등 무상귀속 공공시설·토지, §13③>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 적용제외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 적용제외 ○ (일몰기한) 2021.12.31
<③귀농인 취득 농지 및 임야, §6④>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④공유수면 매립·간척 농지, §84> ○ (감 면 율) 취득세율 2.8% 중 △2.0%p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율 △2.0%p ○ (일몰기한) 2021.12.31
<⑤농·어업인 영농·영림·양식 사업소 §10②> ○ (감 면 율) 주민세(재산·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재산·종업원)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⑥농촌주택개량사업 주택 §16>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최소납부 적용제외 ○ (일몰기한) 2017.12.31	**☞ 감면 세목축소, 일몰 3년 연장 등** ○ (감 면 율) 취득세 100%, 건축물 한정, 감면한도(280만원) 신설 * 최소납부 적용제외 ○ (일몰기한) 2021.12.31
<⑦자경농민 도로·하천 등 점용면허 §63>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2 ▸▸ 취약계층 분야

현 행	개 정
〈①장애인 차량, §17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②국가유공자 차량, §29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자동차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③ 한센인 정착농원, §17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④ 사회적 기업, §22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⑤ 노동조합 고유업무용 부동산, §26〉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⑥ 독립기념관, §30③〉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제외

3 ▸▸ 보육 분야

현 행	개 정
〈①유치원·어린이집 설치·운영 부동산 §19〉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②다자녀 양육자 취득 차량 §22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 적용

4 ▸▸ 의료 분야

현 행	개 정
〈①지방의료원 §38③〉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38의2)**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75%, 재산세 75%(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②근로복지공단 의료·재활사업 §27②〉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③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산업 §30②2〉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④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서울대병원·치과병원 §37〉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75% ○ (일몰기한) 2018.12.31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⑤건강증진사업자 §40>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⑥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 §40조의3> ○ (감 면 율) 취득세 75% 재산세(도시지역분) 7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⑦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 §22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⑧의료법인 의료기관 §38①> ○ (감 면 율) - (특광역·도청소재지인 시) 취득세 △1%p,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그 외)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⑨종교재단법인 의료업 §38④> ○ (감 면 율) - (특광역·도청소재지인 시)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그 외) 취득세 40%,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현 행	개 정
<⑩사립대학교 부속병원 §41⑦>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도시지역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2년 연장 후 일부 축소** ○ (감 면 율) - (19~20년) 현행 감면율 - (21년) 취득세 3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5 ▸▸ 임대주택 분야

현 행	개 정
<①임대주택 40㎡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공공(30년 이상)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공공(30년 이상)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②임대주택 60㎡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③임대주택 85㎡이하, §31①,③>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④장기임대주택 40㎡이하, §31·§31의3> ○ (감 면 율)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⑤장기임대주택 60㎡이하, §31·§31의3> ○ (감 면 율)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 일몰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75%

현 행	개 정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⑥장기임대주택 85㎡이하, §31·§31의3〉 ○ (감 면 율) 재산세 50% * 8년 장기 20호 이상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ㄴ * 8년 장기 20호 이상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⑦LH공사 매입 공공임대(다중·다가구), §31④〉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⑧LH공사 소규모 공동주택 §32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⑨공공임대리츠 60㎡이하 §31의4①,②-1〉 ○ (감 면 율) 취득세 30%, 지역자원시설세 10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10%p축소, 목적세 감면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0%,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40% ○ (일몰기한) 2021.12.31
〈⑩공공임대리츠 85㎡이하 §31의4①,②-2〉 ○ (감 면 율) 취득세 30%,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10%p축소,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0%, 재산세 15% ○ (일몰기한) 2021.12.31

6 ▸▸ 연금주택 등

현 행	개 정
〈①주택담보 노후연금가입 주택 §35②〉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25% * 1가구 1주택자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②민간금융기관 역모기지 가입 주택 §35③〉	**☞ 현행 3년 연장**

현 행	개 정
○ (감 면 율)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감 면 율) 재산세 25% * 1가구 1주택자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③농지연금 대상 담보 농지 §35의2〉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④한국해비타트 무주택자 분양 주택 §36〉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⑤LH공사 방치건축물 §32의2〉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35%, 재산세 25% ○ (일몰기한) 2021.12.31.
〈⑥서민주택 §3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7 ▸▸ 교육 · 문화 분야

현 행	개 정
〈①학교 학생실험·실습용 차량 등 §42②〉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재산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②민간투자사업 학교기숙사 부동산 §42①〉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주민세 재산분·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및 축소(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주민세 재산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현 행	개 정
<③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4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주민세(재산·종업)·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1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감면율 축소 및 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 (19년) 현행 연장 - (20~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④평생교육단체 §44>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1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감면율 축소 및 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 (19년) 현행 연장 - (20~21년) 취득세 50%, 재산세 50%(5년간) ○ (일몰기한) 2021.12.31.
<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44조의2>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및 목적세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8 ▸▸ 기업구조조정 분야 (단위조합 및 금융기관)

현 행	개 정
<①농협·수협·산림·신협조합, 새마을금고간 합병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50%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 부여 * 최소납부세제 적용('21년 부터) ○ (일몰기한) 2021.12.31.
<②금융기관간 합병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기한 3년 연장, 축소(§57조의2⑩)** ○ (감 면 율) 취득세 50%, 등록면허세 50% - 법인세법상 적격합병 요건 부여 ○ (일몰기한) 2021.12.31.

현 행	개 정
〈③행안부·산업부 고시업종간 합병 등 §57조의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등록면허세 75%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④부실 농협수협조합 재산 양수등 §57조의3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 19년 ○ (일몰기한) 2021.12.31.

9 ▸▸ 기업구조조정 분야 (법인)

현 행	개 정
〈①법인간 적격합병 §57조의2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 중소기업 및 기술혁신형법인간 합병 60% ○ (일몰기한) 2021.12.31.
〈②법인간 적격분할 §57조의2③2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③법인간 적격현물출자 §57조의2③3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④법인간 자산교환 §57조의2③4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75%, -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 대상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⑤법인간 자산의 포괄적양도 §57조의2③6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10 ▸▸ 기업구조조정 분야(개인 등)

현 행	개 정
<①개인의 법인전환 §57조의2④>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등**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②중소기업간 통합 §57조의2③5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감면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 ○ (일몰기한) 2021.12.31.
<③국유재산 현물출자 §57조의2③1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일몰 3년 연장, 단계적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75%('19년) → 50%('20년) → 25%('21년) ○ (일몰기한) 2021.12.31.
<④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의 조직변경 §57조의2③7호>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57조의2⑤>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⑥사업재편승인기업 합병 §57조의2⑧>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⑦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전공공기관 자산 관리·처분 대행 등 §57조의3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11 ▸▸ 환경·안전·신문·통신 분야

현 행	개 정
<①녹색건축인증 건축물, §47의2①,⑤> ○ (감 면 율) 재산세 3~10% ○ (일몰기한) 2018.12.31.	**☞ 감면 종료**
<②내진성능확보 건축물(신축), §47의4>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2021.12.31.
<③내진성능확보 건축물(대수선), §47의4>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적용
<④신문 뉴스 통신사업자, §51>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주민세 재산분·종업원분 50% ○ (일몰기한) 2021.12.31.
<⑤국민신탁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53>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12 ▸▸ 수송·교통 분야

현 행	개 정
<①국제선박, §64①>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목적세 감면 종료** ○ (감 면 율) 취득세 △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②연안항로취항·외국항로취항용 선박, §64②>	**☞ 3년 연장,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 5년간 한정**

현 행	개 정
○ (감 면 율) 취득세 △1%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감 면 율) 취득세 △1%p, 재산세* 50% *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은 5년간 한정 ○ (일몰기한) 2021.12.31.
〈③항공운송사업, §65〉 ○ (감 면 율) 취득세 △1.2%p,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재산세 감면기한(5년간) 설정** ○ (감 면 율) 취득세 △1.2%p, 재산세 5년간 50% *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재산세 감면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④하이브리드차, §66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단계적 감면 한도 축소** ○ (감 면 율) 취득세 100% * 140만원('19) → 90만원('20) → 40만원('21) ○ (일몰기한) 2021.12.31
〈⑤경형자동차(승용), §67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감면 한도 설정** ○ (감 면 율) 취득세 100% * 50만원 한도 * 최소납부세제 적용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⑥경형자동차(승합·화물), §67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⑦전방조종자동차, §67③〉 ○ (감 면 율) 자동차세 65,000원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자동차세 65,000원 ○ (일몰기한) 2021.12.31.
〈⑧매매용 중고자동차 등, §68①〉 ○ (감 면 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현행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자동차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⑨대외 무역용 중고 선박·기계장비·항공기, §68③〉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2%p ○ (일몰기한) 2021.12.31.

현 행	개 정
〈⑩대외 무역용 중고자동차, §68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⑪버스·택시 등 운송사업자, §70①〉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⑫운송사업용 천연가스 버스, §70③〉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2년 연장 후 축소,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19~’20), 취득세 75%(‘21) * 최소납부세제 ’19년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13 ▸▸ 국토· 지역개발 분야

현 행	개 정
〈①반대급부 기부채납 부동산, §73의2〉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2년 연장 후 축소, 최소납부세제 적용** ○ (감 면 율) 취득세 100%(‘19~’20), 취득세 50%(‘21) * 최소납부세제 ’ 19년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②주택재개발사업 취득 주택, §74③-4〉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③주거환경개선사업 취득 주택, §74③-5〉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④지방이전 법인·공장, §79, §80〉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 (일몰기한) 2021.12.31.

현 행	개 정
<⑤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 §82>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년간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⑥시장정비사업, §83>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50% ○ (일몰기한) 2021.12.31.
<⑦사권제한토지(도시계획시설), §84①>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50% ○ (일몰기한) 2021.12.31.
<⑧사권제한토지(공공시설용, 철도안전법), §84②,③>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재산세 50% ○ (일몰기한) 2021.12.31.
<⑨벤처기업집적시설 등, §58②>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⑩창업보육센터, §60③>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0.12.31.
<⑪부동산투자회사 등, §180의2>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18.12.31.	**☞ 3년 연장** ○ (감 면 율) 취득세·등록면허세(중과배제) ○ (일몰기한) 2021.12.31.

14 ▸▸ 무기한 감면 검토 (일몰부여 등)

현 행	개 정
〈①학교, §41〉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등록면허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등록면허세·주민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②농업용 농업기계 §7①〉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③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7②〉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재산세 100% ○ (일몰기한) 2020.12.31
〈④광업권, §62①〉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등록면허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⑤출원광업권 및 광산용지상임목, §62②〉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 일몰기한 부여** ○ (감 면 율) 취득세 100% ○ (일몰기한) 2021.12.31
〈⑥문화재, §55②〉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 현행유지** ○ (감 면 율) 재산세 50~100% ○ (일몰기한) -
〈⑦사적지, §55①〉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 현행유지** ○ (감 면 율) 재산세 100% ○ (일몰기한) -

참고2 2019년 지방세 감면 신설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조문 (일몰기한)
① 8년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8년 이상 임대시 **서민 거주 다가구주택**에 대해 **재산세 감면(100%)** * 모든 가구당 40㎡ 이하(건축물대장상 기재 필요) ※ 최소납부세제 적용	제31조의3 (2021.12.31)
②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설	‣ 부부합산소득 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 적용)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제36조의2 (2019.12.31)
③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감면 요건 확대	‣ **청년이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창업 후 **감면 가능한 기간 연장** (현행 4년 → 개정 5년) * 청년 연령기준: (현행) 15~29세 이하→ (개정) 15~34세 이하	제58조의3 (2020.12.31)
④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존 중소기업 중 **사업전환기업**에 대해 **취득·재산세(5년간) 50% 감면**	제75조의3 (2021.12.31)
⑤ 주한미군기지 한국인근로자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 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율) 85m^2 이하 100%, 85m^2~102m^2 75%, 102m^2 이상 62.5% (기간) '19~'21년 ※ 최소납부세제 적용('19)	제81조의2 (2021.12.31)

참고3 2019년 최소납부제 적용 대상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연도
			취	재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19	○	○	'15.1.1 부터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21	○	○	
3	한국농어촌공사(경영회생 지원 환매취득)	§13②2	○		
4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법인	§23①	○	○	
5	한국소비자원	§23②	○	○	
6	노동조합	§26	○	○	
7	임대주택(40㎡이하, 60㎡이하)	§31①1,③1,③2	○	○	
8	준공공임대주택(40㎡이하)	§31의3①1	○	○	
9	행복기숙사용 부동산	§42①	○	○	
10	평생교육시설(*19년까지만 적용)	§44	○	○	
11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	§44의2	○	○	'16.1.1 부터
12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	§45①	○	○	
13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52①	○	○	
14	여수엑스포(재단)	§54⑤	○	○	
15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조정을 위한 취득	§57의3②	○		
16	경차	§67①,②	○		
17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주택 (85㎡이하)	§81③2	○		
18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	§83①	○		
1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시설	§85①	○	○	
20	내진설계건축물(대수선)	§47의4①2	○	○	'17.1.1 부터
21	국제선박	§64①,②,③	○		
22	매매용 중고자동차	§68①	○		
23	수출용 중고자동차	§68③	○		

연번	감면내용	조문	면제세목		적용년도
			취	재	
24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	§13②1의2호		○	'18.1.1 부터
25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고유업무부동산	§14③	○	○	
26	기초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기관	§45조의2	○	○	
27	신협·새마을금고 신용사업 부동산 등	§87①,②	○	○	
28	지역아동센터	§19조의2	○	○	
29	창업중소기업(창업후 3년내) 재산세	§58조의3		○	
30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22조의2	○		'19.1.1 부터
31	학생실험실습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등	§42조②	○	○	
32	평생교육단체(19년까지 적용)	§43조	○	○	
33	문화유산·자연환경 국민신탁법인	§53조	○	○	
34	공공기관 상법상회사 조직변경	§57조의2③7	○		
35	부실금융기관 등 간주취득세	§57조의2⑤	○		
36	학교등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	§60조③1의2호		○	
37	여객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20년까지 적용)	§70조③	○		
38	반대급부 있는 기부채납용 부동산 (20년까지 적용)	§73조의2	○		
39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 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74조③4	○		
40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85㎡이하)	§74조③5	○		
41	법인의 지방이전	§79조①	○	○	
42	공장의 지방이전	§80조①	○	○	
43	시장정비사업(입주상인)	§83조②	○		
44	평택이주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81조의2	○		

지방세
세목별 개요

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요트회원권 취득자
과세표준	○ 취득당시의 가액(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등) ○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
세율	○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 취득가액의 40/1,000 ※ 기타 유형별 세부적인 취득세 세율 : 지방세법 제11조~제12조 참조 ○ 주택 유상거래 취득 : 취득가액의 10~30/1,000 (6억 이하 10/1,000, 6억 초과~9억 이하 20/1,000, 9억 초과 30/1,000) ○ 사치성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의 4배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및 신·증설공장 :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취득시기	○ 부동산 매매 시 :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 건축물 건축·개수 시 :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신고납부 시 첨부서류	○ 매매계약서, 잔금영수증, 법인장부, 등기권리증 등 ○ 건축물 사용승인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납부영수증 등 관련 서류 ○ 토지·건물 수용확인서(대체취득 시)
납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참고1 취득세 세율표 (표준세율, 중과세율)

표준세율

구 분					세 율
부동산	상속			농지	23/1,000(2.3%)
				농지 외	28/1,000(2.8%)
	상속 외 무상취득			상속외 무상취득	35/1,000(3.5%)
				비영리사업자 취득	28/1,000(2.8%)
	원시취득				28/1,000(2.8%)
	공유물의 분할 등의 취득				23/1,000(2.3%)
	합유·총유물의 분할 취득				23/1,000(2.3%)
	주택 유상거래 취득				10~30/1000(1~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0/1,000(3.0%)
				농지 외	40/1,000(4.0%)
기 타	선박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 선박제외)	상속취득		25/1,000(2.5%)
			상속 외 무상취득		30/1,000(3.0%)
			원시취득		20.2/1,000(2.02%)
			수입·주문건조 취득		20.2/1,000(2.02%)
			그 밖의 원인에 의한 취득		30/1,000(3.0%)
		소형선박	선박법 제1조의2 제2항의 소형선박		20.2/1,000(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1,000(2.02%)
		그 밖의 선박			20/1,000(2.0%)
	차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이외)		70/1,000(7.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경자동차)		40/1,000(4.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비영업용 (경자동차 이외)	50/1,000(5.0%)
				비영업용(경자동차)	40/1,000(4.0%)
			영업용		40/1,000(4.0%)
			이륜자동차		20/1,000(2.0%)
		위 외의 자동차			20/1,000(2.0%)
	기계장비	기계장비			30/1,000(3.0%)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20/1,000(2.0%)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에 따른 항공기			20/1,000(2.0%)
		그 밖의 항공기	최대이륙 중량 5,700kg 미만		20.2/1,000(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1,000(2.01%)
	입목				20/1,000(2.0%)
	광업권·어업권				20/1,000(2.0%)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				20/1,000(2.0%)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세율), 제12조(부동산 외 세율) 참조

중과세율 : 표준세율+가산세율(중과기준 세율×배율)

구 분	세 율
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취득**(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 및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중과대상
②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 제외)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 및 법인 등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대도시 **부동산 취득,** 대도시(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중과대상
③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2%)×4배}
④ ①과 ②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⑤ ②와 ③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중과기준세율(2%)×2배}

세율의 특례 : (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 또는 중과기준세율 적용

구 분	세 율
① 형식적인 취득으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 환매등기 병행 부동산의 매매(환매기간 내 환매), 상속(1가구 1주택), 법인합병, 공유물·합유물 분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등록세만 과세
② 간주취득 등의 세율 특례 - 건물의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 취득세 등	중과기준세율(2%) ※ 세목통합 전 취득세만 과세

참고2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2호 내지 제4호).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며(지방세법 제6조 제7호),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됨(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원동기의 동력원이 휘발유인지 경유인지 또는 전기인지 등은 묻지 않으며, 차량 취득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였다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차량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게 되면 과세한다는 점에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와 다른 점임.

기계장비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8호).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9호).

선박

기선, 범선, 부선 및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0호). 일반적으로 선박은 부양성, 적재성, 이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음

입목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1호).

광업권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2호).

어업권

「수산업법」 등에 따른 어업권을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3호).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4호).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5호).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6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7호).

요트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지방세법 제6조 제18호).

참고3 취득유형별 취득의 시기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1)]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 :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① 화해조서·인낙조서 ②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구 분	취득의 시기	비 고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 취득	공사준공인가일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2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등록분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구분됨

납세의무자

○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

과세표준

○ 등록분 :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록당시의 가액
※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요 세율)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8/1,000
	소유권 이전 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2/1,000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2/1,000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소유권		0.2/1,000
차량 등록	소유권(비영업용 승용)		50/1,000 (*경차:20/1,000)
기계장비 등록	소유권		10/1,000
법인 등기	법인설립		4/1,000 (*비영리: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 세부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세율) 참조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종별	구 지역	군 지역
1종	67,500원	27,000원
2종	54,000원	18,000원
3종	40,500원	12,000원
4종	27,000원	9,000원
5종	18,000원	4,500원

납기

○ 등록분 : 등기·등록관서 접수일까지 신고·납부
※ 등록 후 중과세율 적용·부과대상·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면허분(정기분) : 매년 1. 16 ~ 1. 31
※ 수시분 : 면허 증서를 발급 또는 송달받기 전

가산세 적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3 담배소비세

제조담배·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 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사람
과 세 대 상	○ 피우는 담배 ○ 씹는 담배 ○ 냄새 맡는 담배 등
과 세 표 준	○ 담배의 개비 수, 중량(g)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
세 율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제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 - 제3종 엽궐련 : 1g당 103원 - 제4종 각 련 : 1g당 36원 - 제5종 전자담배 : 1㎖당 628원(니코틴용액), 1㎖당 88원(연초 고형물)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1㎖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 : 궐련형 : 20개비 897원, 기타유형 : 1g 88원 - 제6종 물담배 : 1g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납 기	○ 매월 말일까지 반출한 담배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가 산 세 적 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30%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의 면세담배를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제63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위장한 경우

4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총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승마 투표권을 매수한 자가 되고 형식적으로는 한국 마사회 등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자(경륜·경정법) ○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 소싸움 경기 시행자(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과 세 표 준	○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세 율	○ 발매금 총액의 10%
납 세 지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소싸움 등 과세대상 사업장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군·구
납 기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가 산 세 적 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5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해저자원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나 소방시설 등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 흐르는 물을 이용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 시키는 자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의 소유자
과세대상 및 표준세율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 하 수 : 음용수 : 1㎥당 200원, 온천수 : 1㎥당 100원, 기타 : 1㎥당 20원 - 지하자원 : 채광된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1티이유(TEU)당 15,000원 - 화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0.3원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당 1원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에 충당 : 건축물 및 선박가액의 0.04 ~ 0.12%(6단계 누진) - 화재위험건축물은 2배 중과세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3층 이하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장례식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 대형마트, 백화점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3배 중과세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충당 : 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0.023% ※ 탄력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원자력·화력발전 제외)
납세지	○ 특정자원 - 발전용수 : 발전소의 소재지 - 지 하 수 : 채수공의 소재지 - 지하자원 :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 컨테이너 : 컨테이너 취급 부두의 소재지 - 화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원자력발전 : 발전소의 소재지 ○ 특정부동산 - 토지, 건축물 : 물건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납기	○ 특정자원 : 매월 말일까지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6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유분 : 과세기준일(매년 6. 1, 12. 1) 현재 자동차 소유자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

세율

○ 승용자동차(연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cc당 세액	배 기 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600cc초과	200원

○ 승합자동차(연세액)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 화물자동차(연세액)

구 분	금 액
영 업 용	6,600원 ~ 45,000원
비 영 업 용	28,500원 ~ 157,500원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납 기	○ 정기분(연세액의 1/2) : 1기분(6. 16. ~ 6. 30.), 2기분(12. 16. ~ 12. 31.) ○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 승계취득 및 비과세(과세)차량이 과세(비과세)차량이 되는 경우,, 영업용(비영업용)차량의 비영업용(영업용) 전환 시 일할 계산 - 이전·말소등록 시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0% 공제 (한꺼번에 납부하는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공제)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기한까지
가산세 적용	○ 자동차세(주행분)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자동차세(주행분)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서는 다음과 같이 차령에 따라 경감률 적용 과세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7 재산세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성격의 군구 독립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과 세 대 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 세 지	○ 토지, 건축물, 주택 : 물건 소재지 관할 군구 ○ 항공기 : 등록원부 상 정치장 소재지 관할 군구 ○ 선 박 : 선적항 소재지 관할 군구 -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 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과 세 표 준	○ 토지(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표 준 세 율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 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 (3단계 누진세율)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저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 ○ 기타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 ※ 탄력세율 :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 가감조정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선박, 항공기 : 0.3%, (*고급선박 : 5%) ○ 대도시내 산·증설 공장 : 1.25%(5배 중과세율)
납 기	○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세부담 상한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 15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 105%, 3억원~6억원 이하 : 110%, 6억원 초과 130% ※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액(징수액)으로 한다
재 산 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각각의 과세 표준에 해당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1,000분의 1.4를 적용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 ※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1,000분의 1.4)은 조례로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8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균등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재산분 및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개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군·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법인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군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35백만원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세율	○ 균등분 - 개 인 : 10,000원(강화군 3,000원) - 개인사업자 : 75,000원(강화군 50,000원) - 법 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5,000~750,000원 (강화군 50,000 ~ 500,000원) ○ 재 산 분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에 대하여 1㎡ 당 250원 ※ 지방교육세 : 균등분에 한하여 세액의 25%(구 지역) 균등분에 한하여 세액의 10%(강화, 옹진) ○ 종 업 원 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
납기	○ 균등분 : 매년 8. 16 ~ 8. 31 (정기분) ○ 재산분 : 매년 7. 1 ~ 7. 31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 익월 10일 이내 (신고납부)
재산분·종업원분 가산세적용	○ 신고불성실(무신고,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 기간 × 0.025%

9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2013년 소득까지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소득부터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 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 세 대 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
과 세 표 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종합소득 (누진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12} × 근속연수
양도소득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부가세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 율
법인 소득분 (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양도소득 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부가세율)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의 10%

납 기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다음연도 5.1~5.31)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산세 적용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법인지방소득세 ○ 무신고,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따른 가산세 - 무신고 :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 ○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미납부, 과소납부, 초과환급)에 따른 가산세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0.025% :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0.025% □ 특별징수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가산세 = (㉮+㉯) (※한도 : 미납·과소납부세액의 10%) ㉮ 미납·과소납부세액 × 3% ㉯ 미납·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0.02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조〉

법인세														
	당기순손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소득공제등	=	법인세 과세표준	x	세율 (10~2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결정세액 (가산세 포함)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A)								(B)		(C)		(D)		(E)		(F)

* 2013년도 귀속분까지(국세 부가세 형식) : **국세 결정세액(F) × 10%** = 지방소득세

* 2014년도 귀속분부터(독립세 전환) : **국세 과세표준(B) ×** 독립세율 (1~2.5%) (C) - 공제·감면 (현행 특례 없음) = 지방소득세

10 지방소비세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세목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납세의무자 -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세율	○ 과세표준액의 15/100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가 지방소비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특별징수의무자(세무서장, 세관장)가 징수하여 납입

11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과 세 표 준	○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액
과 세 표 준 · 세 율	○ 과세표준 및 세율

구 분	과세표준	세 율
1	취득물건의 과세표준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0/100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3배 중과
2	등록면허세액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담배소비세액	4,399/10,000
5	주민세 균등분 세액	25/100(구) 10/100(군)
6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	20/100
7	자동차세액	30/100

납부불성실 가산세적용	○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불성실(기한 내 미납부,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 부과 : 미납부(과소)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지방세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 제도

Ⅰ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

1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해당 조항
취득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득	취득세(100)	9 ①
		기부채납 조건 부동산 취득 등	취득세(100)	9 ②
		신탁재산의 취득(신탁등기 병행)	취득세(100)	9 ③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9 ④
		존속기간 1년 이하 임시건축물 취득	취득세(100)	9 ⑤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취득세(100)	9 ⑥
		상속개시이전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취득세(100)	9 ⑦
등록면허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등록면허세(100)	26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등록	등록면허세(100)	26 ②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등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등기·등록	등록면허세(100)	26 ② 2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의 등록	등록면허세(100)	26 ② 3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	등록면허세(100)	26 ② 4
담배소비세	과세면제	수출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1
		주한외국군의 군인에 판매하는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2
		보세구역에서의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3
		외항선 등의 선원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4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5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담배	담배소비세(100)	54 ① 6
		북한지역 취업근로자 등 판매용	담배소비세(100)	54 ① 7
		함상훈련 해군사관생 등	담배소비세(100)	54 ① 8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 등이 반입하는 담배 (궐련 200개비 한)	담배소비세(100)	54 ②
		수출담배가 불량 등으로 다시 수입되어 담배보관소 반입을 위한 반출	담배소비세(100)	54 ③

세목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해당 조항
주민세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주민세(100)	77 ① 1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주민세(100)	77 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균등분 주민세(100)	77 ② 1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77 ② 2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77 ② 3
지방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	지방소득세(100)	90
재산세	비과세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	재산세(100)	109 ①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유료사용 등은 부과)	재산세(100)	109 ②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재산세(100)	109 ③ 1
		산림보호구역,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재산세(100)	109 ③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인 임시사용 건축물	재산세(100)	109 ③ 3
		비상재해구조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재산세(100)	109 ③ 4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	재산세(100)	109 ③ 5
자동차세	비과세	국가 등이 소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126 ○ 1
		국가 등이 환자수송용 등에 제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126 ○ 2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자동차세(100)	126 ○ 3
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00)	145 ① 1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100)	145 ① 2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 (건축물과 선박만 해당)	지역자원시설세 (100)	145 ②

2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농어업을 위한 지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직접 경작·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6 ①	
		농업용 온실 등 취득	취득세(50)	6 ②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도로점용 등 면허	등록면허세 (100)	6 ③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직접경작 목적 농지 등 취득	취득세(50)	6 ④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취득세(100)	7 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취득세(100)·재산세(100)	7 ②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등	취득세(100)	8 ①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등	취득세(100)	8 ②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분합하는 임야의 취득	취득세(100)	8 ③	
		임업후계자의 보전산지(99만㎡ 이내) 취득	취득세(50)	8 ③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세율 1000분의 8 적용)	8 ④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및 육상양식용 부동산	취득세(50)	9 ①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취득세(100)·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9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취득세(100)	9 ③	
		어업권에 관한 면허(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100)	9 ③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농업협동조합 등이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등록면허세(50)	10 ①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10 ②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등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1 ①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11 ②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12 ①	
		어업법인의 설립등기	등록면허세 (100)	12 ②	
	한국농어촌공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과 농지	취득세(50)·재산세(50)	13 ② 1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 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	취득세(50) · 재산세(100)	13 ②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취득(해당 농지를 매도할 당시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이 환매(還買)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	취득세(50)	13 ② 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	재산세(50)	13 ② 2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지	취득세(50)	13 ②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0)	13 ② 4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	취득세(50)	13 ② 5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3 ③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 재산세(25)	14 ①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	취득세(100) · 재산세(100)	14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15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취득세(100), 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	15 ②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취득세 (280만원 한도 공제)	16 ①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100) · 자동차세(100)	17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장애인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 후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취득세(100) · 자동차세(100)	17 ②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인이 취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17조의2 ①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	재산세(100), 지역자원시설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7조의2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	취득세(25) · 재산세(25)	18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9 ①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9 ②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지역 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9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20 ○ 1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하는 부동산	재산세(50)	20 ○ 1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 포함)	재산세(100)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20 ○ 1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 · 재산세(25)	20 ○ 2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스카우트주관단체,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임대용부동산 제외)	취득세(75) · 재산세(100))	21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50)	21 ②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22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22 ②	
		사회복지법인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등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 종업원분(100)	22 ③	
		사회복지법인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22 ④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균등분(100)	22 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100) 다만,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2조의2 ①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등록 후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100), 다만,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22조의2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22조의4 ○ 1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	등록면허세(50)	22조의4 ○ 2	
		사회적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22조의4 ○ 3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3 ①	
		한국 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3 ②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 제외)	취득세(100)	26	
		노동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26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27 ①	
		근로복지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27 ①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법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재산세(5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7 ②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28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28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 포함) 및 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	취득세(100)	29 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단체	취득세(100) · 등록면허세(100)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주민세(재산분(100)·종업원분(100)	29 ②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100)	29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취득세(100) · 자동차세(100)	29 ④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25)	30 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25)	30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0 ②	
		독립기념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법인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주민세 재산분(100)	30 ③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31 ① 1	
		장기임대 목적으로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31 ① 2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 ③ 1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 ③ 2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25)	31 ③ 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취득세(50) · 재산세(50)	31 ⑤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조의3 ① 1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조의3 ① 2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50)	31조의3 ① 3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0)	31조의4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대한 감면	위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4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1조의4 ② 1	
		위의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재산세(15)	31조의4 ② 2	
사회 복지를 위한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함)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용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32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5) · 재산세(25)	32조의2 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100)	33 ②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	등록면허세 2017.12.31. 까지 (100) 2018.1.1.~2019.12.31 (75)	35 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재산세 공시가격5억원 이하 주택(25) 공시가격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주택공시가격 5억원에 해당 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공제)	35 ②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1가구 1주태인 경우로 한정)	재산세 공시가격5억원 이하 주택(25) 공시가격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주택공시가격5억원에 해당 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공제)	35 ③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	재산세 공시가격6억원 이하 농지(100) 공시가격6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공시가격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	35조의2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	취득세(100)	36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6	
	신혼부부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50)	36조의2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7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 ①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00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38 ④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500 이내 조례로 정하는 율)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 ④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38조의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 재산세(7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0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 재산세(75)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40조의3 0 1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 · 재산세(25)	40조의3 0 2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학교 등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41 ①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41 ②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학교 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학교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41 ③	
		학교 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41 ④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 해당 학교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균등분(100)	41 ⑤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그 무상사용 기간 동안)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41 ⑥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1 ⑦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해당 학교	취득세(100) · 재산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42 ①	
		「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	취득세(100) · 재산세(100)	42 ②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75) · 재산세(75)	42 ③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43 ①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43 ②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44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4조의2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45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80) · 재산세(80)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80)	45 ②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기초과학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45조의2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5) · 재산세(35)	46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5) · 재산세(35)	46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60) · 재산세(50)	46 ③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 재산세(25)	47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축(증축 또는 개축 포함)하는 건축물로서 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취득일부터 70일 이내 요건을 갖춘 건축물 포함)	취득세(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조의2 ①	
		신축하는 건축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취득일부터 100일 이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포함)	취득세(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47조의2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10)	47조의2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재산세(100분의 3부터 100분의	47조의2 ⑤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이 아니거나 건축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50) · 재산세 (50, 5년간)	47조의4 ① 1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100) · 재산세(100, 5년간)	47조의4 ① 2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은 제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 · 재산세(25)	48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및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	취득세(25) · 재산세(25)	49 ○ 1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등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등	취득세(25) · 재산세(25)	49 ○ 2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방제설비를 갖춘 선박의 취득 등	취득세(25) · 재산세(25)	49 ○ 3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50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50 ②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단체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 종업원분(100)	50 ③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50 ④	
		사찰림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0 ⑤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 등	주민세 균등분(100)	50 ⑥	
	신문 · 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50)· 종업원분(50)	51	
	문화 · 예술지원을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	취득세(100) ·	52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위한 과세특례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그 도서관의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등록면허세(100)	52 ②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은 제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53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5)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 가능	54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50 아내)	54 ⑤	
	문화재에 대한 감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 ①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로 지정된 부동산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 문화재 지정 부동산(100) 보호구역지정 부동산(50) (100분의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 경감)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55 ② 1	
		「문화재보호법」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	재산세(50)	55 ② 2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재산세(50)	56 ③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중소기업간합병기술	57조의2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혁신형사업법인간 합병은 60) 「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임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등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	취득세(100) · 등록면허세(50)	57조의2 ②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75)	57조의2 ③ 1	
		「법인세법」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75)	57조의2 ③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 양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취득세(75)	57조의2 ④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과점주주 간주취득세(100)	57조의2 ⑤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등의 취득	취득세(100)	57조의3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취득세(100)	57조의3 ②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50)	57조의3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조건부로 중소기업자산을 취득후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	재산세(50, 5년간)	57조의3 ④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58 ①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 · 등록면허세(중과 배제) 재산세(중과 배제)	58 ②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3년간)	58 ③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7.5) · 재산세(37.5)	58 ④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35) · 재산세(37.5)	58조의2 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37.5)	58조의2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청년창업기업 5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	58조의3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사업용 재산	재산세(창업일부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58조의3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등	등록면허세(100)	58조의3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취득세(25)	59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59 ②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3년간)	59 ③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협동종합이 제품의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 보관 · 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취득세(50)	60 ① 본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등	취득세(75)	60 ① 단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	취득세(세율 1000분의 20 적용)	60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75) · 재산세(50)	60 ③ 1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중과배제)	60 ③ 2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60 ④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광업권의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 받는 경우	등록면허세(100)	62 ①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	취득세(100)	62 ②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보안관리직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	재산세(25)	62 ③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 · 재산세(25)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하는 철도차량, 철도건설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의 취득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②	
		한국철도공사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63 ③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확정·분할에 따른 토지의 취득, 분할등기	취득세(100) · 등록면허세(100)	63 ④	
		도시철도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	취득세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63 ⑤ 1	
		도시철도공사의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100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63 ⑤ 2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63 ⑤ 3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재산세(50)	64 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	취득세(세율 1천분의 10경감) 재산세(50)	64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선박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경감)	64 ③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자는 재산세 감면 제외)	취득세(세율 1천분의 12 경감) 재산세(50)	65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반납한 자동차 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 등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	취득세(100)	66 ①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재등록	등록면허세(100)	66 ②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140만원 한도 면제, 140만원 초과시 140만원 공제)	66 ③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취득세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100), 취득세액이 14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에서 140만원 공제)	66 ④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100), 취득세액이 50만원 초과시 산출세액에서 50만원 공제)	67 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위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67 ②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	자동차세(소형 승합자동차 세율 적용)	67 ③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자동차세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	취득세(100) · 자동차세(100)	68 ①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및 중고항공기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68 ③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취득세(100)	68 ③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교통안전공단이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5)	69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50)	70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70 ③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35) · 재산세(35)	71 ①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50) · 재산세(35, 5년간)	71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25) · 재산세(25)	71 ③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경감)	72 ①	
		별정우체국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72 ②	
		해당 별정우체국	주민세 재산분(100)· 종업원분(100)	72 ②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100)	73 ①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73 ③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 포함)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취득세(100)	74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해당사업의 관리처분	취득세(75)	74 ③ 1~3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등	취득세(100)	74 ③ 4~5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재산세(50, 5년간)	75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 사업전환계획 승인에 따라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전환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재산세(50, 5년간)	75조의3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20)	76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76 ②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 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 토지	취득세(30)	77 ①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77 ②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취득세(35) · 재산세(35,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78 ①	
		위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 · 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취득세(35) · 재산세(35,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78 ② 1	
		분양 또는 임대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재산세(35, 5년간,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78 ② 2	
		위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취득세(35) · 재산세(35,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78 ③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 조성한 후 직접	재산세(35, 5년간	78 ③ 2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는 60)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해당부분 부속토지 포함)	취득세(50), 재산세(35, 5년간, 수도권 외의 산업단지 75)	78 ④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취득 부동산	취득세(25)	78 ④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5년간 그 다음 3년간 재산세(50)	79 ①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	등록면허세(100)	79 ②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5년간 그 다음 3년간 재산세(50)	80 ①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취득세(100)	81 ③ 2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의 주택	취득세(75)	81 ③ 2 나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의 주택	취득세(62.5)	81 ③ 2 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취득하는 평택시내 1가구1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득세(85㎡이하 100%, 85㎡~102㎡ 75%, 102㎡이상 62.5%)	81의2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해당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재산세(100, 5년간)	82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50, 5년간)	83 ①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거용 제외)	취득세(100) · 재산세 (50, 5년간)	83 ②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	재산세(50) (재산세 도시지역분 100)	84 ①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해당 부분)	재산세(50)	84 ②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해당 부분)	재산세(50)	84 ③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 ①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제외)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법인등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	취득세(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등록면허세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 자치단체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재산세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 (재산세 도시 지역분 포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5조의2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그 법인등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등록면허세(100)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85조의2 ②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	85조의2 ③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하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	85조의2 ③ 2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	85조의2 ③ 3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이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 ①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이 같은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재산세(100)	87 ① 2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87 ② 1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87 ② 2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은 제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88 ①	
	정당에 대한 면제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00)	89 ①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 포함)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89 ②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 해당 정당	등록면허세(100) 주민세 재산분(100)·종업원분(100)	89 ③	
		정당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해당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100)	89 ④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	취득세(100)	90 ①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 해당 마을회 등	재산세(100)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주민세 재산분 (100)·종업원분 (100)	90 ②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의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 그 부동산의 등기	취득세(세율 1천분의 20 적용) 등록면허세(100)	9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00)	92 ①	

구 분	조문제목	비과세·감면 내용	해당세목 (감면율, %)	해당 조문	비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	등록면허세(100)	92 ②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세(100)	92 ③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및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모두 신청하는 경우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92조의2 ①	

※ 각 조항별 세부 감면요건 및 추징규정, 감면적용 기한(일몰기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등 반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 지방소득세 특례

감면분야	공제와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한도)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업회계 기준의 조정계산서를 제출	산출세액 20%공제	§93-①	1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	공제액 산출세액 13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만원 초과 : 7만1천5백원+13만원 초과 금액의 30% 한도액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74만원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74만원-[(총급여액-3천300만원)×0.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0].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는 50만원으로 한다.	§94	총급여액 기준 3천300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이하 :66만원 7천만원초과 :50만원
	배당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액의 10%	§95-①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자산총액의 20%이상 자산을 상실	자산상실비율 공제	§96-①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 공제	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공제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10%	§97-①~②	10%(초과분은 5년간 이월공제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한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 30만원+(인원수-2명)×30만원 6세 이하 공제대상 자녀 2명이상인경우:(인원수-1명)×15만원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첫째인 경우 : 30만원 둘째인 경우 :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 70만원	§97의2-①~③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단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합이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1.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97의3	
	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항목별 세액공제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지급액×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지급액×15% 의료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 없음) 대상 의료비	§97의4	보장성 :100만원 장애인전용 :100만원

감면분야	공제와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한도)
			지급액×1.5%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지급액×1.5% 기부금 공제 : 「소득세법」상 기부금세액공제액 ×10% 표준세액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표준세액공제외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자(1만3천원), 성실사업자(1만2천원, 근로소득 없는 사업자(7천원)		의료비:700만원(본인, 장애인 등은 한도없음) 교육비: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1명당 300만원), 대학생(1명당900만원)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외국정부 공무원 등의 근로소득 및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98-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0.3%(신규상장중소기업 및 신규상장중견기업0.4%)	§99-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50% 세액감면	§100-①~④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5~30% 세액감면	§101-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일정기한이내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공제	(작성일15일이내×0.0002)+(작성일15일초과 60일이내×0.0001)	§101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10%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각 호 금액 합산 10% 세액공제	§102-①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투자금액의 0.1% (중견기업0.3%,중소기업0.6%)	§103-①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등이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 소득	50% 세액감면	§104-①	
		내국인 특허권등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10% 세액공제(중소기업이 취득)	§104-②	10%
			5% 세액공제(중소기업외의 취득)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대여하는 소득	25% 세액감면	§104-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3년(100%), 그다음 2년(50%)	§105-①~②	③ 참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50% 세액감면	§106-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 10%	§106의2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특례	공공차관 도입으로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대가	공공차관 협약에 따라 감면	§107-①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면제	국가·지자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채권 소득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국외양도소득	100%면제	§108-①~②	

감면분야	공제와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한도)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0.3% 세액공제 (중견기업 0.5%, 중소기업 0.7%)	§109-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설비를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이용비용의 0.7% 세액공제	§109-②	사업소득한정
	안전설비 투자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투자	투자금액의 0.3% 세액공제 (중견기업 0.5%, 중소기업 0.7%)	§110-①	사업소득한정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0.1% 세액공제 (중견기업 0.3%, 중소기업 0.6%)	§111-①	사업소득한정
	환경보전시설 투자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0.3% 세액공제 (중견기업 0.5%, 중소기업 1%)	§112-①	사업소득한정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0.3% 세액공제 (중견기업 0.5%, 중소기업 0.7%)	§113-①	사업소득한정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0.7% 세액공제 (중견기업 0.8%, 중소기업 1%)	§113의2-①	사업소득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제작비용의 0.7% 세액공제 (중소기업 1%)	§113의3-①	사업소득한정
	고용창출투자	고용창출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공제+추가공제	§114-①	사업소득한정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된 경우	인건비의 1% 세액공제	§115-①	사업소득한정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경력단절 여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건비의 1% 세액공제	§115의2-①	사업소득한정
	근로소득 증대 기업	기업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경우	임금증가분의 0.5%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	§115의3-①	사업소득한정
	청년고용 증대 기업	기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 × 20만원 세액공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50만원)	§115의4-①	사업소득한정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	개인지방소득세의 50% 세액감면	§115의5-①	
	중소기업에 취업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	70% 세액감면	§116-①	15만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	전환인원에 20만원을 곱한금액	§117-①	사업소득한정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의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5~10% 세액공제	§118-①	사업소득한정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특례	중소기업간의 통합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양도자산	이월과세 적용	§119-①	
	법인전환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120-①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하기 위한 양도	50% 세액감면	§121-①	과세이연제외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전환하는 경우	50% 세액감면	§122-①	
	주주등의 자산양도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해당법인에 증여	양도차익상당액 100% 면제	§123-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6년(100%), 그 다음 3년(50%)	§124-①	

감면분야	공제와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한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하는 중소기업	100% 세액감면	§125-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100% 세액면제	§126-①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100% 세액감면	§126-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100% 세액면제	§127-①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100% 세액감면	§127-②	
	농업인 등에 대한 면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100% 세액감면	§128-①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1항제외)	이월과세 적용	§128-②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100% 세액면제	§128-③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양도	100% 세액면제	§129-①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이상 축사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	100% 세액면제	§130-①	1명당 1,650㎡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농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0% 세액면제	§131-①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 해당 농지 등을 임차기간내 환매한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131의2-①	
공익사업 지원을 취한 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공익사업의 시행자,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0~40% 세액감면	§132-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매수대상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양도	25-40% 세액감면	§133-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	25-40% 세액감면	§133-②	
	행정중심복합도시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	50% 세액감면	§134-①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의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	3년(100%), 그 다음 2년(50%)	§135-①~②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	10% 세액감면	§136-①	

감면분야	공제와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한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투자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득한 시설	취득금액의 0.7~1% 세액공제	§137-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른 월세액 지급금액	「소득세법상」 공제금액의 10%	§137의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	30% 세액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75%)	§138-①	
	장기임대주택 감면	국민주택을 2000.12.31.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 후 양도	50% 세액감면	§139-①	기간
	신축임대주택 감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	100% 세액감면	§140-①	기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	양도소득세 감면액 × 10% 세액감면	§140의2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특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	10% 세액감면	§140의3	
	미분양주택 특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후 양도	2%세율 or 종합소득분으로신고	§141-①	기간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08.11.3.~'10.12.31.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	0.6%~4.2%(지방세법92조1항)	§142-①	기간
	미분양주택 취득자 특례	서울시 밖의 미분양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60~100% 세액감면	§143-①	기간
	비거주자 주택취득 특례	비거주자가 미분양주택외의 주택을 양도	10% 세액감면	§144	기간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특례	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을 5년 이내 양도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라 60~100% 감면	§145-①	기간
	준공후 미분양주택 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 및 취득하고 5년이상 임대한 주택 양도	50% 세액감면	§146-①	기간
	미분양주택 취득자 특례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100% 세액면제	§147-①	기간
	신축주택 취득자 특례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85㎡이하의 주택을 5년내 양도	100% 세액면제	§148-①	기간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산림개발소득 감면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에 따라 양도	50% 세액감면	§149-①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자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0.3%(중소기업0.5%)	§150-①	1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 비용지급	10% 세액공제(§102준용)	§151-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	투자금액의 0.1%(§103준용) (중견기업0.3%,중소기업0.6%)	§151-②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국외에서 2년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 이전	5년(100%),그다음2년(50%)	§152-①~③	
		국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 복귀하면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3년(100%),그다음2년(50%)		

감면분야	공제와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한도)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5년이내(100%),그다음2년(50%)	§153-①~②	감면한도적용
		조특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3년이내(100%),그다음2년(5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3년이내(100%),그다음2년(50%)	§154-①	감면한도적용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년이내(100%),그다음2년(50%)	§155-①-1,2	감면한도적용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가 수행하는 개발사업	3년이내(50%),그다음2년(25%)	§155-①-3	감면한도적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신설,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 여수박람회장에 사업장 신설하는 사업	3년이내(100%),그다음2년(50%)	§156-①-1,3,5	감면한도적용
		기업도시·신발전지역 육성 투자·여수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지정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업, 새만금사업 시행	3년이내(50%),그다음2년(25%)	§156-①-2,4,6,7	감면한도적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	3년이내(100%),그다음2년(50%)	§157-①~②	감면한도적용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금융중심지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감면대상사업을 영위	3년이내(100%),그다음2년(50%)	§158-①~②	감면한도적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3년이내(100%),그다음2년(50%)	§159-①~②	감면한도적용
	금사업자,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지한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60-①-1	감면한도적용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한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160-①-2	감면한도적용
	현금영수증가맹점 공제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건수*2원	§161-①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금지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지정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을 통하여 공급	초과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	§162-①-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	§162-①-2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10% 세액감면	§163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 세액공제	§164	

감면분야	공제와감면	내 용	대상세목 및 감 면 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한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공제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01%	§165	10%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의 0.02%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	조특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받는 사업자	10% 세액공제	§16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특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	조특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	§167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공제감면세액의 10%	§167의2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지방소득세 특례 제한 등 (중복지원 배제, 감면배제, 이월공제, 적용순위, 적용방법 등)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규정 참조)	§168~§176의2	

※ 각 조항별 세부 감면요건 및 추징규정, 감면적용 기한(일몰기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등 반드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감면분야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세(%)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자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이 소유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자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또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자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특례	§63의2-⑥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자방소득세 면제	개인지방소득세(100)	§66-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자방소득세 면제	개인지방소득세(100)	§67-③	
저축 자원을 위한 조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배당소득 과세특례(2014.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100)	§89-①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및 이자소득 특례	개인지방소득세(100)	§89의3	
간접 국세	농업,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 감면	자동차세(100)	§106의2-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21의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자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8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8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 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취득세, 재산세 조특법 §121의2 제4.5,12항 규정에 따라 각각 감면	§121의2-①	

감면분야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세율(%)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1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취득세(재산세(5년간 감면대상세액 전액, 그다음 2년간 50경감) 단서(3년간 감면대상세액 전액, 그다음 2년간 50경감)	§121의2-④-1	조례 별도 규정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1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토지재산세(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그다음 2년간 50, 과세표준액에서 공제), 단서(3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그다음 2년간 50, 과세표준액에서 각각 공제)	§121의2-④-1	조례 별도 규정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취득세(감면대상세액 전액)	§121의2-⑤-1	조례 별도 규정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재산세(5년간 감면대상세액 전액, 그다음 2년간 50경감), 단서(3년간 감면대상세액 전액, 그다음 2년간 30경감)	§121의2-⑤-2	조례 별도 규정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토지재산세(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그다음 2년간 50, 과세표준액에서 공제), 단서(3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 그다음 2년간 50, 과세표준액에서 각각 공제)	§121의2-⑤-3	조례 별도 규정

감면분야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세(%)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취득세(3년간 감면대상세액 50경감, 그다음 2년간 30경감) 재산세(3년간 감면대상세액 50경감, 그다음 2년간 30경감), 토지재산세(3년간 공제대상금액의 50공제, 그다음 2년간 30공제, 과세표준액에서 각각 공제)	§121의2-⑫-3	조례 별도 규정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취득세(감면대상세액 50경감), 재산세(3년간 감면대상세액 50경감, 그다음 2년간 30경감), 토지재산세(3년간 공제대상금액의 50, 그다음 2년간 30, 과세표준액에서 각각 공제)	§121의2-⑫-4	조례 별도 규정

※ 각 조항별 세부 감면요건 및 추징규정, 감면적용 기한(일몰기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등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감면분야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세(%)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일몰기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 2019.7.1. 장애등급 개편(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	취득세(100), 자동차세(100)	조례§2	지특법 제17조 제1항 적용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12.5)	조례§3	2020.12.31
문화지구내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50)	조례§4	2020.12.31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세(100분의 5 경감)	조례§5-①	2020.12.31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취득세(10년간 감면대상세액 전액, 그다음 3년간 50경감)	조례§6-0-1	2020.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	취득세(15년간 감면대상세액 전액 면제)	조례§6-0-1	2020.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	취득세(7년간 감면대상세액 50경감, 그다음 3년간 30경감)	조례§6-0-3	2020.12.31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취득세(100)	조례§7	2020.12.31
사회적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만 19세 미만인 사람, 지특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주민세 균등분(100)	조례§8	2020.12.31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	취득세(100)	조례§11	2020.12.31

감면분야	내 용	대상세목 및 감면세(%)	관련 조문 (조-항-호)	비 고 (일몰기한)
주택재개발 등에 대한 감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당 사업 지역 내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취득세(100)	조례§12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 제5호 적용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법 제24조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	고지서 1장당 150원 공제(전자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 중 어느하나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공제(전자송달 방식 과 자동이체 방식 모두 신청)	조례§13	

※ 각 조항별 세부 감면요건 및 추징규정, 감면적용 기한(일몰기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등 반드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Ⅱ 지방세 중과세 제도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의 설치·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 및 법인등기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고 이 외에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서울, 인천, 의정부,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을 말함(상세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 세목별·유형별로 지방세의 중과세 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적기초 (②)	세목별 분류(①)					중과지역별 분류(③)			비 고
	취득세	등 록 면허세 (등록분)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대도시 내	특·광역시 특정지역	지역구분 없음	
사치성재산	○		○					○	지법 13 ⑤/ 111 ①
법인본점용 부동산	○					○			지법 13 ①
법인 등기		○				○			지법 28 ②
법인부동산 등기	○	○				○			지법 13 ②
공장 신·증설	○	○	○			○			지법 13 ①/ 13 ②/ 111 ②
공장용 건축물			○				○		지법 111 ①
특정 건축물					○			○	지법 146 ②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1 ▸▸ 취득세 중과세 제도

▸▸ 과밀억제권역 본점 · 주사무소 및 공장 신 · 증설 중과

❖ 중과세율 요약 (지방세법§13-①)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취득 · 등록 구분		2011년 부터	2010년 까지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본점 · 주사무소 (신축 · 증축에 한함)	5년 경과	1천분의 68	1천분의 60	1천분의 8
	5년 미만	1천분의 84	1천분의 60	1천분의 24
공장 신 · 증설 (도시형 업종 제외)	5년 경과	1천분의 68	1천분의 60	1천분의 8
	5년 미만	1천분의 84	1천분의 60	1천분의 24

※ 지방세법 제13조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지방세법§13-⑥)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지방세법§13-①)

◆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 합숙소 · 사택 · 연수시설 · 체육시설 등 복리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 제외) (지방세법시행령 §25)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지방세법§13-①)

◆ 적용기준

•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이상인 것.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 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 · 휴게실 · 목욕실 · 세탁장 · 의료실 ·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 무기고 ·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 (지방세법시행규칙 §7-①)

◆ 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 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지방세법시행규칙§7-②-1)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중과세대상 제외》(지방세법시행규칙§7-②-2)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대도시 내 법인 중과

❖ 중과세율 요약(지방세법§13-②)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등록 구분		2011년 부터	2010년 까지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1천분의 80	1천분의 20	1천분의 60
	신 축	1천분의 84	1천분의 60	1천분의 24
본점 이외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1천분의 80	1천분의 20	1천분의 60
	신 축	1천분의 44	1천분의 20	1천분의 24

❖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지방세법§13-②-1,2)

◆ 적용대상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적용제외(지방세법§13-②)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 아래의 경우 중과세 적용제외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지방세법§13-③)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4)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5)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 중과세제도 개요 (지방세법§13-⑤)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 별장의 취득 (지방세법§13-⑤-1)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다음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별장에서 제외(지방세법시행령§28-②)

• 대지면적 660㎡ 이내이고 건축연면적 150㎡이내일 것.

- 당해 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 광역시 및 수도권 등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를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장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봄.

❖ 골프장의 취득 (지방세법§13-⑤-2)

◆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 고급주택의 취득 (지방세법§13-⑤-3)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예외 :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 적용 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④)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고
-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의 경우에는 274㎡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 고급오락장의 취득 (지방세법§13-⑤-4)

◆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 제5항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예외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실종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⑤)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행위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파친코, 슬롯머신, 아케이드 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

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 고급선박의 취득 (지방세법§13-⑤-5)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 고급선박의 적용기준(지방세법시행령 §28-⑥)

•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 중과 적용례 (지방세법§13-⑤, 시행령§28-①)

•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부 취득의 경우란 별장 등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함.

•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봄.

예외적인 취득세 중과

❖ 취득세 중과 세율적용 일반 (지방세법§16-①)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

• 법§13-①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

• 법§13-①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 법§13-⑤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 고급주택 등 중과 세율적용 (지방세법§16-②)

◆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세율로 함.

❖ 공장신설 또는 증설 중과 세율적용 (지방세법§16-③)

◆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가 다를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표준세율의 3배 중과)의 세율을 적용함.

•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제외함.

❖ 중과 세율 중복시 적용 (지방세법§16-⑤)

◆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함.

2 ▸▸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 재산세(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 지방세법 §111)

❖ 별장 : 4%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 : 4%

❖ 고급선박 : 5%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법소정 공장신설·증설 :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은 2.5/1,000의 5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제외)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신설 및 증설

▸▸ 주민세 재산분(대기오염 배출시설 중과, 지방세법 §81)

❖ 폐수 또는『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 중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 적용세율 : 일반세율(1제곱미터당 250원)의 2배

지역자원시설세(화재위험 건축물 등 중과, 지방세법 §146-②)

❖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0.04~0.12%)의 2배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함.
- (약칭)소방시설법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
  - 위락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및 예식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숙박시설(객실 바닥면적 합계 60㎡미만 제외)
  -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 물류터미널, 하역장, 집배송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 표준세율(0.04~0.12%)의 3배

❖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약칭)소방시설법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 위락시설(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밖의 층에 설치된 유흥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 또는 관람석 500석 이상 또는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 5층 이상의 종합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서 병상 100개이상, 정신보건시설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

지방세 구제제도 및 마을세무사 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

1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구제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2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과세전적부심사제도(지방세기본법 제88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구세는 군수·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군·구청 재무과·세무과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제도(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군·구세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하거나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 구제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신 청 인	⇨	○ 심사 및 결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30일 이내 신청 - 시청 및 군·구청 접수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 시세 : 인천광역시장 · 군·구세 : 군수·구청장		- 결정통지에 불복 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

○ 신 청 인	⇨	○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심사 및 결정	⇨	○ 신청인에게 통지
- 90일 이내 이의 신청 또는 심사청구 - 시청 및 군·구청 접수		- 90일 이내 결정 통지 -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 시세 : 인천광역시장 · 군·구세 : 군수·구청장 - 결정 및 통지(심사·심판 청구) · 시세 : 조세심판원장 · 군·구세 : 인천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가능 (조세심판원, 시청, 군·구청 접수) - 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 불복 시에는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 신 청 인 - 90일 이내 신청 - 군·구청 접수(4부) - 군·구 의견서첨부	⇨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의견첨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진달	⇨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진달
				⇩
○ 행정소송	⇦	○ 신청인에게 통지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 제기	⇦	○ 감사원 결정 및 통지 - 3개월 이내 결정 (감사원장)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불복청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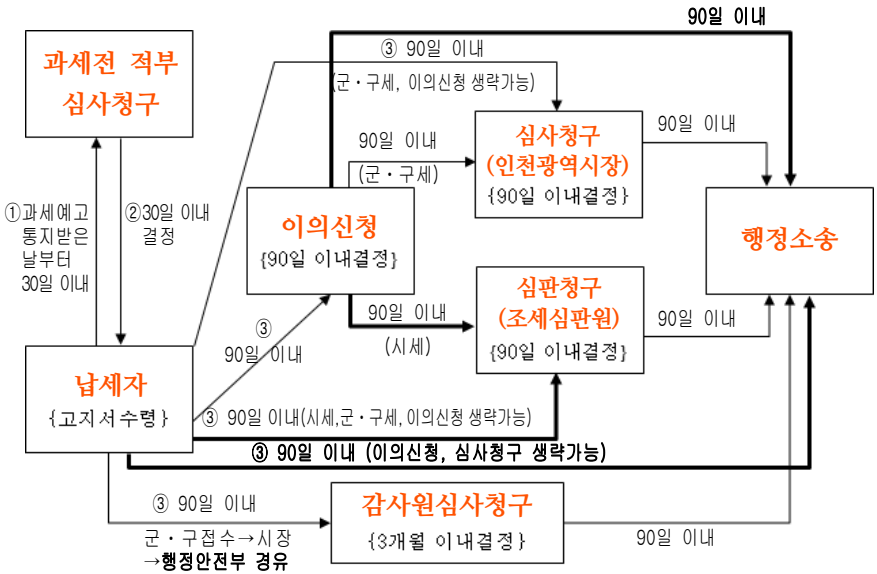

Ⅱ 마을세무사 제도

복잡한 세무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세불복 관련 비용 부담 등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마을(읍, 면, 동)단위로 지정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마을 담당 세무사 제도

이용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 될 수 있음

상담사항

- 국세와 지방세 세무 무료상담
-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무료상담(각종 신고서 작성 대행·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이용방법

- 120미추홀콜센터 또는 인천시광역시(https://etax.incheon.go.kr)와 군·구 홈페이지를 이용 마을세무사 확인
- 마을세무사에게 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상담 신청
- 1차 상담 이후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실 방문 상담 가능

문 의 120 미추홀콜센터 ☏ (032) 120

참고1 인천시 마을세무사 명단

담당기관	담당지역(읍면동)	성명	전화번호
시본청	시청 민원실 시민상담센터 세무 전문 상담위원 (매주 수요일 14:00~16:00)	손영철	032-858-0606
		이정호	032-428-0012
		정용은	032-463-0008
	인천시 관내	조준상	032-439-1250
중구	신포동, 연안동, 신흥동, 북성동, 송월동	성민석	032-427-0210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이현섭	032-545-7087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장병기	032-747-0090
동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송림4동, 송림6동	서두범	032-710-2133
	화수2동, 송현1,2동, 송림4동, 송림6동	배호식	032-589-6848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금창동	김창수	032-589-3060
남구	숭의1,3동, 숭의4동, 용현2동, 용현5동	고재성	032-777-2777
	숭의2동, 용현3동, 용현1,4동	신현배	032-886-3655
	학익1동, 학익2동	유광수	032-223-7870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동	조현행	032-864-6504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7동	임은호	032-872-0020
		이현희	032-715-7939
	주안4동, 주안8동	김주택	032-423-4000
	관교동, 문학동	김태웅	032-882-0055
연수구	옥련1동, 옥련2동, 청학동	김기영	032-813-6102
		조명석	032-817-8620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	박종석	032-816-1060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양희모	032-715-6311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이병택	032-431-0983
		이재동	032-715-7654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이세웅	032-811-5755
		이승재	032-834-5714
		고봉성	032-832-1909
남동구	구월1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설회근	032-429-9301
		이찬희	032-472-3344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이판암	032-466-4166
		김석주	032-465-8206
	구월3동, 남촌도림동	이병덕	070-4632-5881

담당기관	담당지역(읍면동)	성명	전화번호
남동구	구월4동, 만수5동, 만수6동	문치명	032-556-7700
		윤현자	032-817-3568
	장수서창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권혁만	032-464-3040
		한재형	032-719-2377
		고길명	032-818-6230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김종석	032-821-2711
		이철수	032-428-3450
부평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홍광표	032-527-3184
		박종렬	032-552-4955
	산곡1동,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십정1동, 십정2동	이재관	032-202-7728
		진덕수	032-502-2613
	청천1동, 청천2동	박상록	032-623-6363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이후종	010-8629-6987
	삼산1동, 삼산2동	고상용	032-546-3300
	부개1동, 부개2동, 부개3동, 일신동	한정수	032-529-9052
계양구	효성1동, 효성2동	서일영	032-521-6321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김우영	032-555-7712
		임정완	032-551-3311
		이경원	032-327-0471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김지원	032-543-1014
		강성은	032-543-7374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최인희	032-508-1993
서구	검암경서동	남수연	032-715-7331
	연희동	이덕균	032-568-8840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강명길	032-563-7692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순태	032-715-5678
	신현원창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김한수	032-566-9338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이상원	032-568-4426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임병호	032-565-3343
		김현일	032-568-3786
	검단1동, 검단4동, 연희동	서태종	032-266-0001
강화군	강화읍,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이재봉	032-933-3205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이기흥	032-933-3941
옹진군	북도면,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영흥면, 자월면, 연평면	신원덕	032-471-3533

납세자보호관 제도

Ⅰ 납세자보호관 제도



자치단체	부서	납세자보호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실	032) 440-2205	032) 440-8634
중구	기획감사실	032) 760-7073	032) 760-7059
동구	기획감사실	032) 770-6932	032) 770-6059
미추홀구	기획조정실	032) 880-4056	032) 880-4851
연수구	기획예산실	032) 749-7104	032) 749-7079
남동구	소통협력담당관실	032) 453-2162	032) 453-2969
부평구	기획조정실	032) 509-6096	032) 509-7604
계양구	기획예산실	032) 450-5053	032) 551-5713
서구	기획예산실	032) 560-4063	032) 560-2703
강화군	기획예산실	032) 930-3403	032) 930-3631
옹진군	재무과	032)-899-2413	032-899-2419

신청(접수)방법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Ⅱ 납세자보호관 제도 개요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3.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4.23.)
4.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제정 2018.9.3.)
5. 각 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및 권한

1. (역할) 고충민원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2. (권한) 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②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권, ③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등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이미 집행이나 처분이 완료된 것에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경우 부과취소 등 세무부서장의 후속처분이 필요한 민원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군·구는 90일) 전까지
처리기간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실지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접수한 날로부터 7일(필요시 14일의 실지조사 및 7일의 추가 연장 가능)

Ⅲ 납세자보호관 업무 및 처리절차

1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고충민원 제외 대상

1.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2.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본안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은 대상에 포함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의 처리 구분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	군구 납세자보호관
① 시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① 군수·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② 내용이 유사한 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시 관할 2개 이상 군·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군수·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③ 군·구세 관련 군·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재심청구)	③ 그 밖에 군수·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기간

1.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2. 처리기간 : 접수한 납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 산입)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 가능

신청(접수)방법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 구에서 고지된 지방세관련 고충민원 등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신청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2 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예정)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

요청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함.

1. 지방세기본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함.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지방세기본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 기한 및 처리기간

1. 신청기간 :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군·구는 90일 전까지)
2. 처리기간 : 접수한 납부터 7일 이내(초일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 산입)

※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7일의 범위에서 1회 추가 연장 가능

신청(접수)방법

-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 건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신청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3 세무조사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

세무조사 기간 연장

① 세무조사 담당 세무부서장이 신청

1.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2. 연장기간 : 20일 이내
3. 연장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각호의 경우

1.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 신청

1. 신청기간 :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전까지 신청
2. 연장기간 : 20일 이내

※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1.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은 제외)
2.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신청(접수)방법

-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 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에 관한 기간연장 신청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신청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4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결정

신청기한 : 조사개시 3일전까지(공휴일 · 토요일 제외)

연기사유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 천재지변,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기한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 토요일을 제외)

결정내용 :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처리

※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 가능

신청(접수)방법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군,구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에 관한 연기신청은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관(032-440-2205)에게 문의

신청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5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업무범위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에 대한 처리
2.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기한 연장

❖ 기한의 연장신청 및 결정

1.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기한연장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신청(접수)방법

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1.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의 기한연장 신청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 납부의 기한연장 신청: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가산세 감면신청

❖ 가산세 감면신청 및 결정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가산세 감면 신청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신청(접수)방법**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징수유예 등의 신청

❖ **징수유예 등 신청 및 결정**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2.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의 이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처리

❖ **신청(접수)방법**

징수유예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 군·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 **신청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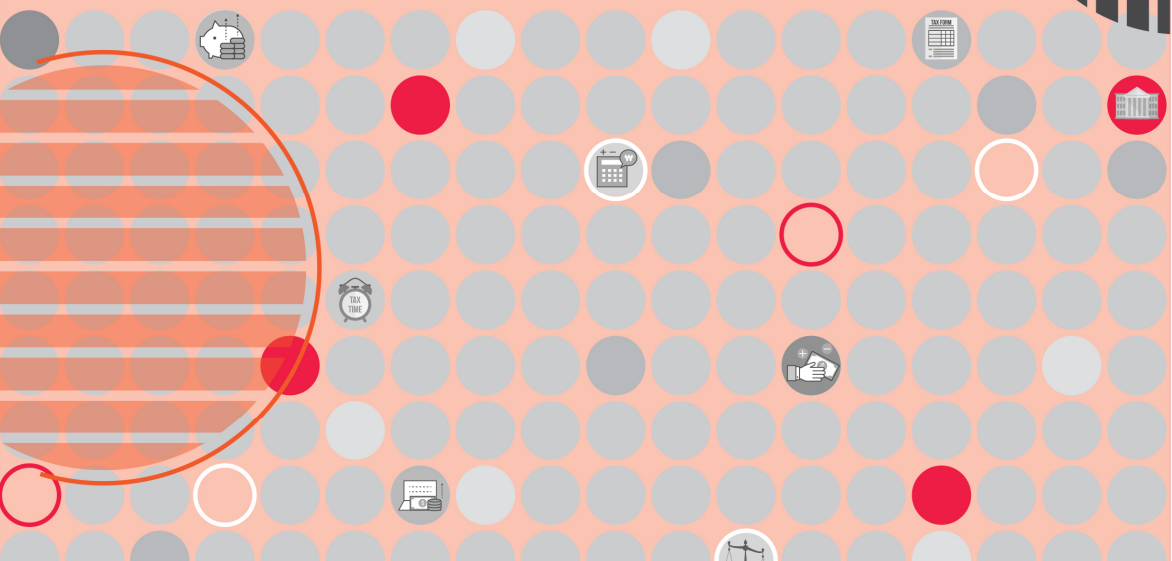

Ⅰ 지방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방법

- ♠ 방문 납부 : 금융기관, CD/ATM기, 구청세무과
- ♠ 전화 납부 : 폰뱅킹(ARS) : ☎1599-7200, 1661-7200
-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천이택스, 지로납부, 간편결제
- ♠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구 분	주 요 내 용	이용시간
방문납부	▪ 세무과 방문 납부	근무시간 09:00~18:00
	▪ 은행 창구 납부 -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신협, 저축은행 등	은행영업시간 09:00~16:00(평일)
	▪ CD/ATM 납부 -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납부 - 본인, 타인세금(전자납부번호) 모두 가능	ATM영업시간 07:00~23:30(연중)
전화납부	▪ ARS 이용 납부 (1599-7200,1661-7200) - 계좌이체(신한은행) - 지방세 조회, 환급금 조회 신청 - 9개 신용카드납부 (단, 취득세는 타인명의 카드 납부 불가)	00:00~23:30(연중)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로(금결원), 위택스(행안부), 인천시이택스(ETAX)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본인, 타인세금 (전자납부번호, 납세번호, 간편번호)납부 가능 - 포인트사용, 할부수수료는 카드사마다 상이 확인 필요	00:30~23:30(연중) *은행별 상이
	▪ 가상계좌(7개 은행) 납부 - 신한,농협,기업,우리,하나,국민,수협	00:30~23:30(연중) (농협 00:45~23:30)
	▪ 은행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07:00~23:30 (*은행별 상이함)
모바일 납부	▪ 스마트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환급금 조회신청, 전자납부번호 납부, 납부 확인 등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금융앱 - 금융기관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	00:30~23:30(연중) (*은행별 상이함)

1 ▸▸ 방문납부(금융기관 · 군구 세무과)

❖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및 국내발생 모든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조회· 납부가능

※ 다만, 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됨

❖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상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으면 납부 가능

[CD/ATM 납부]
카드·통장투입 ▶ 지방세 선택 ▶ 납부 선택(현금-본인, 현금-타인, 신용-본인, 신용-타인) ▶ 비밀번호 입력 ▶고지내역 조회 ▶납부할 내역확인, 납부건 선택 ▶ 납부, 영수증 출력

2 ▸▸ 전화이용 납부(지방세ARS)

❖ 개 요 : 전화한통으로 간편하게 인천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ARS 납부시스템

☎ ARS 전화 : 1599-7200, 1661-7200

❖ 납부방법 : 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신한은행 텔레뱅킹 가입자
- 신용카드 : 9개(국민,농협,삼성,현대,롯데,외환,비씨,하나SK)

❖ 이용시간 : 00시 ~ 23시 30분 납부 가능

※ 전자납부번호 입력 시 본인인증없이 타인납부가능

3 ▸▸ 인터넷 이용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 개 요 : 인터넷으로 전국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조회, 질의답변등 정보검색 가능한 지방세 포털

☎ 사용문의 안내 : 110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전자신고 납부 이용시간 : 07:00 ~ 23:30

⇒ 전자신고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 전자납부
- **지 방 세 :**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을 금융기관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 납부
- **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 전자신청
: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이체, 자동차세 연납신청등 지방세 업무를 처리

인천 이택스 (etax.incheon.go.kr)

❖ 개 요 : 인천시에서 고지된 지방세를 금융기관등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 납부가능

☎ 사용문의 안내 : 440-3061~2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 전자납부 이용시간 : 0시 30분 ~ 23시30

◆ GIRO 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

◆ 가상계좌

⇒ 전자신고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레저세

※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 2013.12.31일 이전인 양도소득분에 한하여 신고 가능
: 2014.1.1.일부터 개정지방세법에 의거 국세청 홈택스 이용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법인지방소득세 : 2013.12.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신고법인 중 Etax사이트를 통해 신고한 법인은 Etax에서만 수정가능
: 2014.1.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신고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신고, 수정 가능
※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 국세청 홈텍스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신고

⇒ 전자납부
- **지방세** : 인천시 지방세 모든 세목
- **세외수입 :**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상수도요금, 교통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 전자신청
: 지방세 환급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등 지방세 업무를 처리

인터넷 지로납부 (www.giro.or.kr)

❖ 개　　요 : 전국 지방세를 인터넷 지로사이트 이용 납부 가능

❖ 이용방법 : 사이트에 접속 → 납부고객용 선택 →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 → 지방세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납부

❖ 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 [365일 가능]

4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 개　　요 :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모바일 버전으로, 전국 지방세를 납세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회·납부 할 수 있는 시스템

❖ "스마트 위택스" 설치 방법

① 스마트폰(각 통신사) 모바일 앱 스토아 검색란에 '지방세 납부' 입력

②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 받아 설치

③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스마트위택스 주소 (smart.wetax.go.kr)를 이용하여 위택스앱에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실행

금융앱

❖ 개　　요 :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 및 납부

❖ 시행시기 : 2017. 7. ~ 현재

❖ 이용시간 : 00:30 ~ 23:30

❖ 참여기관 : 12개(금융결제원,신한,하나,부산,대구,농협,기업,국민,경남,광주, 케이뱅크,새마을금고)

※ 광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8. 12월 적용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Ⅱ 지방세 납부매체

가상계좌 이용 납부

❖ 개 요 : 과세기관에서 납세자에게 발급한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식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 확인 (납세자별로 계좌번호 다름)

※ 납세자와 입금자가 상이해도 입금처리됨

❖ 이용가능시간 : 00:30 ~ 23:30 〔365일 가능〕

❖ 대상은행 : 신한, 농협, 기업, 우리, KEB하나

은행 납부 (인터넷은행 포함)

❖ 개 요 :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

❖ 대상은행 : 시중은행 ,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처리내용 : 인터넷은행을 통해 인터넷 계좌납부, ATM 기기 납부, 지방세 환급, 자동이체

자동이체 이용 납부

❖ 개 요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

❖ 신청대상 : 전 시중은행 계좌(출금통장) 소지자,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 신청방법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각 구청 세무과

❖ 신청세목 :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

◈ 정기분세목에 한하여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지방세 자동납부

◈ 대상카드 : 10개카드사(BC,삼성,전북,현대,롯데,신한,제주,하나,NH,KB국민,광주,수협

※사용(용도)제한카드 : 기프트카드, 선불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삼성체크카드, 가족카드 등

신용카드 이용 납부

❖ 납부대상 : 전 신용카드 소지자

❖ 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CD/ATM기, 구청 세무과 신용카드 단말기

〈 지방세 세외수입을 앱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 앱스토어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앱카드 다운로드
◈ 위택스 지방세(PC, 스마트폰)에서 결제수단을 앱카드로 선택
◈ 앱카드 실행 후, 결재코드 또는 QR코드 선택입력
◈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버튼 클릭

신용카드 포인트제 납부

❖ 개 요 :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 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

❖ 이용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 처리방법 : 카드사별 카드포인트 정책에 의거 처리되며,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 이용가능시간 : 07:00 ~ 23:30 〔365일 가능〕

[처리 방법 :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와 납부할 세액 비교** 후 납부처리]

구 분	납부 처리 방법	적용 사례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남은 납부세액에 대해 카드결제 처리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5,000원 카드납부금액 : 5,000원
납부세액 < 잔여포인트	신용카드 잔여 포인트에서 납부세액 전액 차감	납부세액 : 10,000원 (-)잔여포인트 : 10,000원 카드납부금액 : 0원

※ 납부할 세액이 10,000원이고 잔여 포인트가 5,000Point인 경우, 부족액 5,000원은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 조회포인트, 사용가능 카드, 차감액 및 차감시점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

Ⅲ 지방세 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자 공제혜택

❖ 개 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납기(6월,12월) 2019년 1월중 연세액 신고·납부시에는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구분	1월 연납	3월 연납	6월 연납	9월 연납
공제비율	10%	7.5%	5%	2.5%

❖ 신청방법 : 해당 군구의 세무부서 전화·방문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인천 이택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 공제혜택

❖ 개 요 : 정기분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전자고지 및 자동계좌 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고지서 1장당 아래와 같이 세액을 공제함

❖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이메일)중 어느 하나 신청 : 150원 공제

❖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이메일) 모두 신청 : 500원 공제

◆ 자동이체 + 전자고지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전자고지 신청 : 이택스(http://etax.incheon.go.kr)

※ 공제대상 제외

자동이체

- 납세자가 본인에게 부관된 지방세를 지정된 은행계좌 및 카드에서 출금날짜에 자동으로 납부
- 신청방법 : 군구세무과에서 직접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이용

전자송달 신청

-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지방세 고지 안내서를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음
- 신청방법 : 군구세무과에서 직접신청 또는 홈페이지(위택스, 인천 이택스) 이용

◆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전자고지만 신청한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Ⅰ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1 취득세 (지방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관련 세율

구 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1.0%	-	0.1%	1.1%
	85㎡ 초과	1.0%	0.2%	0.1%	1.3%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2%	0.2%	2.4%
9억원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2%	0.3%	3.5%

그 외 부동산 취득 관련 세율

취득방법	부동산구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매 매	농 지	3.0%	0.2%	0.2%	3.4%
	기 타	4.0%	0.2%	0.4%	4.6%
신축(원시취득)		2.8%	0.2%	0.16%	3.16%
상 속	농 지	2.3%	0.2%	0.06%	2.56%
	기 타	2.8%	0.2%	0.16%	3.16%
증 여	비영리	2.8%	0.2%	0.16%	3.16%
	비영리 외	3.5%	0.2%	0.3%	4.0%

2 인지세 (국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5. 1. 1.부터 전자수입인지만 사용 가능(기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세 액	기재금액	세 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3 부동산 취득세 세금 외 추가비용

등기신청 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5,000원	13,000원	1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별표)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특별시 및 광역시 기준)
①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9%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1%
㉱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3%
㉲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6%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3.1%
②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5.0%
③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0%
㉯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6%
㉰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2.0%
④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8%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8%
㉰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2%
⑤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저당권설정금액의 1%
㉯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

4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준비할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 수수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 60일 경과 시 불이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자치구에서 계약서 검증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절차

① 매매계약서 구청 부동산거래 담당부서 검인(신고)	⇨	② 검인(신고)된 계약서에 인지첨부	⇨	③ 취득세 납 부	⇨	④ 국민주택채권매입
계약서 원본 2부 사본 2부에 검인 ※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한 신고 시 검인 불필요(신고필증 대체)		인지세율 → 부록참조		구청 세무과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표 →부록참조

⇩

⑥ 등기권리증 수령, 등기부확인	⇦	⑤ 등기신청서 작성, 신청

※ 2006.1.1 이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관할 구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함.

부동산거래 신고절차(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체)

❖ 인터넷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관할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

↓

실명확인,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

↓

인터넷 온라인 접수(관할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를 기재(신고필증 불필요)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 방문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

관할 구청 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
(담당공무원)

↓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
(신고필증 첨부)

5 ▸▸ 부동산 취득시 알아야 할 내용

부동산 계약체결전

❖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건축물관리대장·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을 확인

부동산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시에는 계약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

❖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 매도자와 이에 대한 향후 처리방법을 약정

❖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 계약 등 문제발생을 대비하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동산 취득 관련 주요 세금감면 제도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2021.12.31일 까지 ⇒ 취득세 면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전용면적60㎡이하는 2021.12.31일 까지 ⇒ 취득세 면제 ✦ 8년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2021.12.31일 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취득세 면제(종전 부동산가액 초과액은 과세) -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인 경우는 동 부동산의 소재지가 수용부동산이 소재하는 시·도내의 지역이거나 수용부동산이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시·도와 연접한 시·도내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이 아닌 지역

☞ 감면대상자께서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군·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1 재산세 (지방세)

주택 및 건축물

❖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은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1/2)과 9월(1/2)에 나누어 과세되고, 일반건축물은 7월에 과세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
(10만원 이하 : 남동구, 서구, 강화군/ 5만원 이하 : 옹진군)

토 지

❖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대상**(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대상**(사무실, 점포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자경농지 등)으로 분류되며, 9월에 과세됩니다.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이 결정 됩니다.

관련 부가세

❖ 종전의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합산하고, 지방교육세는 토지/건축물/주택분 재산세에 병기하여 과세되며,

❖ 종전의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로 건축물/주택분 재산세에 병기하여 과세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국세)

납세의무자

❖ **주 택**

◆ 전국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1주택 외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 : 전국 토지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세　　율

❖ 주　　택

과 세 대 상	과 세 표 준	일반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　율	누진공제	세　율	누진공제
주　　택	3억원 이하	0.5%	-	0.6%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0.7%	60만원	0.9%	90만원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1.0%	240만원	1.3%	33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4%	720만원	1.8%	93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2.0%	3,720만원	2.5%	4,430만원
	94억원 초과	2.7%	10,300만원	3.2%	11,010만원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과세제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85%
* (세부담상한) 일반 : 150%, 3주택이상 :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토　　지

과 세 대 상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토　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15억원 이하	1.0%	-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별도합산 과세대상	200억원 이하	0.5%	-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별도합산대상 토지 공시가격 80억원 이하는 과세제외
* 과세표준 =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85%
* (세부담상한) 별도합산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 150%

◆ 종합부동산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함께 과세

납　　기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Ⅲ 차량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자동차 신규등록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자동차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음.

❖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자동차 등록증 교부받음.

❖ 자동차 신규등록시 구비서류(신조차·수입차)

- 신규등록신청서(수입증지)
- 자동차제작증(신조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신분증,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신규등록신청을 위해 운행하는 경우 10일간 임시운행허가증 교부)
- 임시번호판 2매(임시운행증미발급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취득세영수필통지서,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번호판대금영수증
- 대리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 등록처리절차



❖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

※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참조

자동차 취득세 납부(취득세편 참조)

❖ 취득세 : 자동차 취득가액의 × 7% (비영업용승용차 기준)

※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배기량 1천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자동차세 납부(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음.

❖ 납세의무자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 12.1)의 자동차 소유자

❖ 과 세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 세 표 준 :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적재정량 등

❖ 세　　율 : 자동차세편 참조

❖ 납　　기

기　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 1 기분	6월 1일	6. 16 ~ 6. 30	1월 ~ 6월분
제 2 기분	12월 1일	12. 16 ~ 12. 31	7월 ~ 12월분

❖ 일할계산 제도

◆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신규등록 :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

◆ 중고자동차 양도·양수의 경우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부과

[일할계산 금액 예시]

○ 2,000cc 자동차(2,000cc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를 2016. 2. 22 양도시 (1기분 세액계산)

- 연간세액 400,000원(2,000cc× 200원)+지방교육세(120,000원) = 520,000원
- 일할계산금액 양도자 : 자동차세 400,000원× (52일/366일) = 56,830원
  지방교육세 56,830원× 30% = 17,040원
  계 = 73,870원
  양수자 : 자동차세 400,000원× (129일/366일) = 142,070원
  지방교육세 142,070원 × 30% = 42,620원
  계 = 184,690원

❖ 연세액 분할납부 및 일시납부 제도

◆ 연세액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음.

-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 납부할 수 있음.
  즉, 자동차세 분할납부는 3월, 6월, 9월, 12월 4회에 걸쳐 납부함.

◆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다음 기간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음.

- 1월(1월 16일 ~ 1월 31일) : 1년간 세액의 10% 공제
- 3월(3월 16일 ~ 3월 31일) : 4월 ~ 12월 기간분의 10% 공제
- 6월(6월 16일 ~ 6월 30일) : 7월 ~ 12월 기간분의 10% 공제
- 9월(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 12월 기간분의 10% 공제

❖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 유의사항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며, 이미 교부한 경우에는 그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함

◆ 또한, 자동차세 체납에 대하여 독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

❖ 중고자동차 차등과세 제도

◆ 차령이 3년이상인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자동차세를 경감 과세

자동차 이전등록 · 말소등록

❖ 자동차세를 양수받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자동차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수입증지)
◆ 양도증명서(수입인지),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영수증
◆ 취득세 납부영수증 및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 및 봉인(등록번호 변경시)

※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15일 이내, 증여 20일 이내, 상속 6월이내(단, 2013.12.19이전 사망시 3개월 이내), 기타 15일이내

❖ 자동차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폐차장에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제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폐차·천재지변 등은 제외)
- 사고사실 증명서류(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
- 도난신고확인서
- 수출면장 또는 계약서(수출하는 경우)

❖ 이전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대상·금액 :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참조

❖ 과태료부과 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2 참조

차량 취득 관련 주요 세금감면 제도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3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 ☞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감면 세부요건 : 지특법 제17조 참조 (2019.7.1. 장애등급제 개편 예정(장애인복지법)
○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 취득세 100% 감면(승차정원 6인이하 승용자동차 최대 140만원 까지 경감) ※ 감면 세부요건 : 지특법 제22조의2 참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급~14급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 ☞ 취득세, 자동차세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감면 세부요건 : 지특법 제29조 참조
○ 경형자동차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 감면 세부요건 : 지특법 제67조 참조

☞ 감면대상자께서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군·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Ⅳ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도

1 수정신고 제도

수정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49조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 적법·유효한 수정신고가 있으면 수정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며, 그 수정신고의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감면됨. 단,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1년 이내 수정신고	2년 이내 수정신고	비 고
가산세 감면율	50%	20%	10%	과소신고 가산세만 감면

2 경정청구 제도

경정청구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경정청구 요건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3 ▸▸ 기한 후 신고 제도

▸▸ 기한 후 신고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를 '기한 후 신고'라 함)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기한 후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한 후 신고 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

❖ 기한 후 신고 시 그 기한 후 신고의 시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50%,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20% 가산세를 감면함.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비교〉

구분(효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세액의 확정력	○	×	×
가산세의 감면	과소신고 가산세 10, 20, 50% 감면	-	무신고 가산세 20%, 50% 감면

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제도

1 기한 연장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6조(기한연장)

요 건

❖ 기한연장 :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세입금 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을 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2 징수 유예

관련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제29조(징수유예)

요 건

❖ 징수유예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구 분	기 한 연 장	징 수 유 예
기 간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대 상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 신고납부기한전 : 가능 - 신고납부기한경과후 : 불가능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 부과전 : 고지유예, 분할고지 - 납기전 : 징수유예 - 납기후 : 체납액의 징수유예
효 과	가산세 배제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단, 체납액의 징수유예는 중가산금만 배제
담보제도	있음(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Ⅵ 분할납부 및 물납 제도

1 분할납부 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입법취지

❖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할납부 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 신청 : 납부기한내 신청

분할납부 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방법

구 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후 2개월이내 분납액	5백만원 초과액	50% 이하의 금액

❖ 분할납부 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2 물납 제도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입법취지

❖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동일 구·군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물건 : 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물납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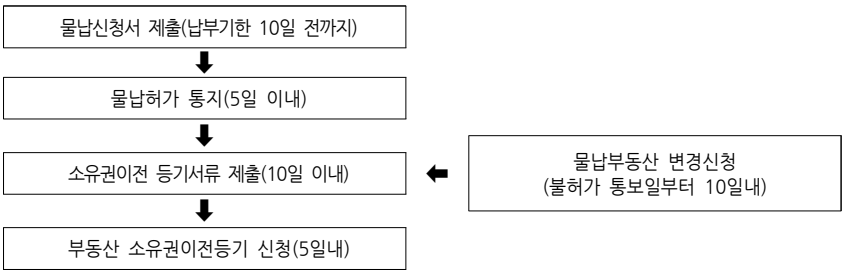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주 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Ⅶ 생활과 밀접한 국세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주식등 을 양도하였을때 양도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양 도 가 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 득 가 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

필 요 경 비 … 실가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보유기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세대 1주택 외	10%	12%	15%	18%	21%	24%	27%	30%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세 율 … 양도소득세율표 참조

=

산 출 세 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주요 세율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10,④3,4,⑤,⑦)

<table>
<tr><th colspan="2">자 산</th><th colspan="2">구 분</th><th>'04.1.1.~
'08.12.31.</th><th>'09.1.1.
~
'09.3.15.</th><th>'09.3.16.~
'13.12.31.</th><th>'14.1.1.~
'17.12.31</th><th>'18.1.1.
~3.31.</th><th>'18.4.1.~</th></tr>
<tr><td rowspan="9">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td><td rowspan="3">보유
기간</td><td>1년 미만</td><td colspan="3">50%</td><td colspan="3">50%[1),3)]</td></tr>
<tr><td>2년 미만</td><td colspan="2">40%</td><td>40%[1)]</td><td colspan="3">40%[1),4)]</td></tr>
<tr><td>2년 이상</td><td colspan="6">기본세율</td></tr>
<tr><td colspan="2">분양권</td><td colspan="4">기본세율</td><td>50%[6)]</td></tr>
<tr><td colspan="2">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 + 1조합원
입주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td><td>기본세율
('07년부터
50%)</td><td colspan="3">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td><td>보유기간별
세율(단,조정
대상지역[7)]내
⇒기본세율+
10%p</td></tr>
<tr><td colspan="2">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
입주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td><td>60%
(입주권 포함
3 이상인
경우 '06년
부터
60%)</td><td>45%
(1년
미만
보유시
50%)</td><td rowspan="2">보유기간별
세율(단,
지정지역[2)]
⇒기본세율
+ 10%p)</td><td>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8)]</td><td>보유기간별
세율(단,조정
대상지역[7)]내
⇒기본세율+
20%p</td></tr>
<tr><td colspan="2">비사업용 토지</td><td colspan="2">'07년부터 60%</td><td colspan="2">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기본세율+10%p)[5)]</td></tr>
<tr><td colspan="2">미등기양도자산</td><td colspan="5">70%</td></tr>
<tr><td colspan="2">기타자산</td><td colspan="6">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td></tr>
</table>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10%p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2) '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 / '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1.1.부터 적용

4)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14.1.1.부터 적용

5) '16.1.1. 이후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104①8, 기본세율 + 10%p)

6), 7) 조정대상지역('18.3월 현재) 서울시 전역, 부산시(해운대·연제·동래·남·부산진 및 수영, 기장군), 경기도[과천시·광명시·성남시·고양시·남양주시·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한정한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

8) '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 '18.4.1. 이후 양도분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 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 + 10%p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20%p	
		지정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기본세율+10%p	
			2년 미만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경합없음)
			2년 미만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일반지역	1년 미만	50%	(경합없음)
			2년 미만	40%	

❖ 비사업용 토지 세율(소법 §104①8)

양도 시기	2009.3.16.~ 2015.12.31[1]	2016.1.1.~ [2]			2018.1.1.~ [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본세율 [1년(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적용] * 소법 ('14.1.1. 개정 전)§104⑥ * 소법 부칙('14.1.1. 제12169호)§20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5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
[소법 부칙(제9270호, '08.12.26.)§14]

❖ 기본세율(소법 §104①1, §55①)

'10년 ~ '11년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 ▸▸ 상속세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시 5% 세액공제해 줍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 기간

법정신고기한	제 출 대 상 서 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예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상속세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총 상 속 재 산 가 액
※ 본래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 간주상속재산(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 추정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전 1년(2년)이내에 2억(5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 산 입 액
※ 비과세 재산(국가·지자체에 유증한 재산,금양임야·문화재 등)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사 전 증 여 재 산 가 액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단,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은 기간에 관계없이 합산)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 속 공 제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 가업(영농)상속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단, 위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 내 금액만 공제 가능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의직계비속이면 30% 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 신고세액공제·증여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 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물납·분납

⇓

납 부 할 상 속 세 액

3 ▸▸ 증여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 기본세율 〉 -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일반 증여재산인 경우

증 여 재 산 가 액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비과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등)

-

채 무 부 담 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채무 등)

+

증 여 재 산 가 산 액 ※ 당해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증 여 재 산 공 제 등 ※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임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 여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	4억6천만

⇓

산 출 세 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 대 생 략 할 증 과 세 액 ※ 세대생략 증여시 30%할증(단,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수증한 경우 40% 할증)
- 직계비속 사망시 예외

-

세 액 공 제 등 ※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

연부연납 · 분납 ※ 물납 불가

⇓

납부할 증여세액

〈 특례세율 〉 -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적용 재산

증 여 재 산 가 액 ※ 해당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

-

채 무 부 담 액

⇓

증여세 과세가액

+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 ※ 특례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과세가액의 합계액이며, 30억원 한도임

-

증 여 공 제 ※ 5억원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부동산감정평가법인의 수수료 등

⇓

증여세과세표준

×

세 율 ※ 10%(특례세율)

⇓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 액 공 제 등 ※ 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30의5⑩)

⇓

납부할 증여세액

4 종합부동산세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 주 택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인별합산)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자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제외),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과세대상 :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동산세 계산방법

구 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Σ 공시가격	Σ 주택 공시가격	Σ 종합합산 토지 공시가격	Σ 별도합산 토지 공시가격
-		-	
공 제 금 액	6억원(1주택자 9억)	5억원	80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85%	85%	85%
=		=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는 3주택이상 등]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별도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억원 이하 / 0.5 (0.6)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0.9) / 60만원 (90만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 1.0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 0.5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0 (1.3)	240만원 (330만원)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4 (1.8)	720만원 (930만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2.0 (2.5)	3,720만원 (4,43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94억원 초과	2.7 (3.2)	10,300만원 (11,010만원)						

=

종합부동산세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

산출세액	주택분 산출세액	종합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별도합산 토지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전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당액) X 150%]를 초과하는 세액 ※ 3주택이상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 20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5 ▸▸ 농어촌특별세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재원확보를 위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세·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받은 자

▸▸ 세 율

❖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 레저세 납부세액의 20%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 납부방법

❖ 취득세 및 레저세 등을 신고납부시 함께 납부

국세 전화상담 및 세무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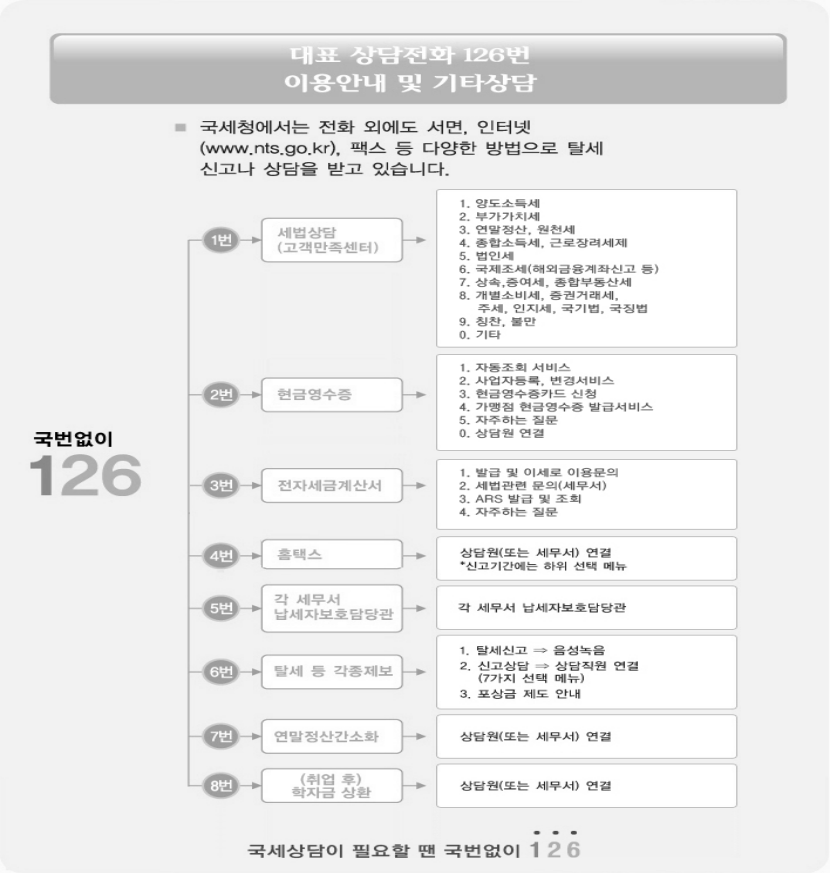

【세무서 안내전화】

인　천세무서 032)770-0200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남인천세무서 032)460-5200 : 연수구, 남동구
북인천세무서 032)540-6200 : 부평구, 계양구
서인천세무서 032)560-5200 : 서구, 강화군
김　포세무서 031)980-3200 : 강화군, 경기도 김포시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기　획 : 세정담당관　정 상 구

편　집 : 세 정 팀장　김 종 호
주　무　관　한 종 칠
세목별팀장 및 업무담당자

발 행 처 :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0
FAX　: (032)440-8702

발 행 일 : 2019년 2월

※ 본 책자는 안내 · 참고용으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내·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바, 과세관청 및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